

해자의 얼굴이 없는 것입니다. 회생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삼풍도 국가배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은 가해 행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책임사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장애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사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UN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UN이 20년전에 장애자 선언을 할 때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장애 대부분이 사회적이고 억압적인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교통사고로 생긴 장애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얼굴이 없는 가해자들이 생기는 인권침해를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주 애매해지고 아직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확정시켜야 된다. 피해자를 보상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의무,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정희가 근대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며 우선하는 얘기가 민족중흥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내걸었어요. 어떻게 근대화라는 것이 나라의 목표가 되느냐는 수단이어야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족의 목표가 되느냐는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서 몇십 년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황홀해 졌는데, 이제 와서 감옥에 넣어 놓고 잘못되었다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재판을 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고쳐야 하느냐. 어디까지 소급해야 하느냐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부 스스로 못푸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필요

시민 단체에서 이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들이 꿈을 꾸야 합니다. 김수환추기경이 관훈클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들 그럴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2대가 있으면 1대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자기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집평수가 크면 더 행복하고 이런 수량적인 수치로만 우리는 결부시키고, 길들여져 있는데 행복이 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자,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문화일보 21일자 김금자씨가 ‘95년의 가르침’이란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는 태도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쓰다가 내가 5천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더 이상 돈이 필요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느 옛글에 이런 글이 나온다. 천하게 보이는 것은 앉아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것 하나, 불통 속에 불이 많이 끊혀 있는 것 둘, 불당에 부처님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 셋, 앞뜰에 돌이나 초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 넷.. 불공드릴 때 좋은 공덕을 많이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천한 것이다.”

지금 우리 기독교처럼 타락한 종교도 없습니다. 상업주의·화장주의·물량주의·수량주의 등 더많은 것이 곧 행복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 전체가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지지해 온 겁니다. 특히 박정희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살아 보세’ 했을 때 우리가 혹하고 반해서 현혹해 비린 것은 우리도 가져보야겠다는 소유욕이, 소유가 우리 존재를 규정해 왔습니다. 재산이 우리 행복의 표시였습니다.

남북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강의 제목을 ‘한국과 나’라고 했으니까 나얘기를 합시다. 저는 학생운동 때부터 사회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라밖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적 많이 접촉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를 밖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 아직도 강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성호 돌아온다고 하던데 대부분 신문을 읽어보면 북한이 우성호를 내주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하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성호가 와도 살 주는 것은 별개다. 둘째, 정말 한심한 것은 ‘우상호만 아니다, 더 보내라, 왜 우상호만이냐.’ 기본적인 발상이 인도주의의 제스처를 아주 전략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한술 더뜨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술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새끼들은 왜 우성호를 보내지? 뭔가 구린 것 이 있다’라는 이 생각이 기사의 전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무래기냐, 마음이 찌들리고 좁으냐는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령 인도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주 수량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 인도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물량이 많으면 인도주의가 된다는 어느 수치가 1만 달러가 지나면 사람이 인도주의적으로 된다는, 이런 식의 수량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그래서 5.18문제가 나올 때 내가 새누리신문에 사설을 썼습

니다만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박원순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효 문제를 지금 따지느냐. 시효는 인도주의에 관한 한없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새로운 해석이고 관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령 영양실조에 북한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칩니다. 어른들 특히 나 같은 사람들은 10년 있으면 죽을 테니까 영양실조가 걸려도 상관이 없지요. 영양이 공급이 안되면 감성의 타격이 온답니다. 그 영양실조가 걸린 지금의 상태의 아이들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같이 살아야 하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영을 예견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아이들하고 우리들의 자손들하고 같이 살아서 이웃하고 살고 장사도 같이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보다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갖다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우성호 보내라, 동진호 보내라, 뭐 보내라' 자꾸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데, 이번 겨울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입을 타격은 몇 십년 걸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통일문제 풀어야

둘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하는데, 다 속지마세요.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평화의 문제입니다. 틀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일본의 세력이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또 거꾸로 중국의 영향이 육로를 통해서 일본과 태평양에 진출하고, 미국도 곤란하고 중국과 소련도 곤란할 것입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인데요, 이 충돌을 완충시키는 것이 38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 놓아야지 홍정이 되지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한반도의 정치가 잘못되어서 중국에 불었다하면 일본이 불리해지고 일본에 불었더라면 중국이 불리해져 서로 불신이 증폭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야 해요.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겠다. 이것은 서로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

이다 하는 설명을 우리가 해야합니다. 우리가 또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서로 신망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제껴놓고 우리는 본디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할 권리가 있다라고 자꾸 우리 안의 단결만을 이야기를 하면 여타의 주변국가들이 '저 사람들 통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치'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사람처럼 공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의 운전에서부터 모든 일에 그렇게 공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해외수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규칙, 규율이 어디 있어요? 먼저 가면 장땡이지, 이런 백성들이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라는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했으니까 반대로 그런 콤플렉스가 생깁니다만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열등의식의 반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뵈놈, 왜놈, 곰(소련), 코쟁이(미국) 이것은 다 주변국가에 대한 멸시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오는 반사의 공격성입니다. 이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정정당당하게 일대일로 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능률하고 뛰어하고 당당한 자세를 어디에서 키우나? 안타까운 일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교훈 '유럽석탄철강공동체'

21일자 동아일보에 '독일과 불란서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을 보면 구라파에서 독일과 불란서는 3번이나 전쟁을 치른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2차대전후 독일의 수상은 아데나워였습니다. 그는 반나치운동을 하다가 44년부터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치와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 독일의 수상이니까 불란서는 유리했지요. 그런데 그때 불란서의 의상이 로베르 슈망이었고, 드골이 수상이었는데 반독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사사건건 독일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었죠. 슈망 외무장관은 후손들이 과거의 그런 관계가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장 모네와 이야기를 해서 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알자스 로렌지방은 불란서에서 가장 철강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이곳의 철강과 독일에서 가장 석탄이 많이 나는 투르지방 두 쪽을 연결시켜 철강과 석탄을 공동관리하는 안이 것입니다. 철강은 군사무기의 요체요, 석탄은 에너지의 원천아닙니까? 철강과 석탄 생산량과 사용도를 서로 공동관리를 하면 전쟁의 가능성과 에너지의 전쟁화, 이 두 가지를 감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두 장관이 이것을 만들어 아데나워 수상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데나워가 무릎을 닦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당장 조인하겠다고 나서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안해서 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서명을 하고 여타의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57년에 로마에서 6개 국가가 여기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라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양국이 이렇게 하면 구라파 전체에 평화를 심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이름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한림대 일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공동심포지움에서 발제한 유명한 일본의 경제학자 미야시마교수(지금은 런던대학에서 은퇴)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불란서가 독일한테 당하고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독일이 겼으니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질 않고 과거에 당한 나라가 콤플렉스를 이기고 같이 사는 길을 모색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변국가에게 계속 당했으니까 모두들 두들겨 주여야 한다는 이 콤플렉스를 언제 이기느냐, 그것을 이기기 전에는 역사적인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통일은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 통일하지만 통일주장을 하면 할수록 흡수통일의 혼란에 빨려들어 갑니다. 통일하기 전에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해서 우리가 사는 자세가 북한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하다, 남한에 믿을 만한 단체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장대로 해도 되겠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입증되기 전에는 통일은 안됩니다. 왜 북쪽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요구합니까.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구라파공동체가 5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불란서 장관의 아이디어다." 기발하지요. 이것은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발의할 때 사람들을 모았겠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미야시마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생각할 때우리 상상력을 확장시키자.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중국이 4개 국가로 분할이 되고 일본도 2개로 나뉘어 한 정부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줄여서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만들 것이 하나 그 다음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기차가 일본 동경에서부터 시작해 한반도를 거쳐 중국에서 월남으로 내려가서 타일랜드, 말레이지아 반도를 거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가 육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우리 후대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죽지만 후대사람들이 발랄하게 이런 생각을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자"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는 통일이 안됩니다.

틀을 넓게 잡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나라 세우는데 손해가 되는 것인가'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가장 보편적인 가치의 기초없이 어떻게 여러분은 인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인권운동을 하

면 할수록 이러한 이론적인 실제 경험적 뒷받침을 자꾸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생의 틀, 더불어 살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모든 계층 모든 사회의 분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자는데도 설득을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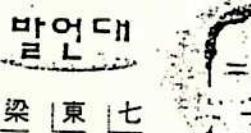
동아일보 1995년 12월 22일 금요일

獨-佛 관계에서 배워야 할것들

20세기 중반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다. 1870년 전쟁에선 프랑스가 전략지역인 알자스로렌지방을 농지에 빼앗겼고 세 차례전에서 프랑스는 실지발환을 위해 대 독일 보복전을 걸쳤다. 독일은 2차대전 기간동안 프랑스를 점령, 비시회회경부를 세우고 통치함으로써 1차대전배상금 3백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하던 프랑스에 낙수였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관계는 원전히 달라졌다. 양국은 유럽연합(EU)의 테두리내에서 단식 물적 지면의 자유로운 원래를 보장하고 있다. 학위와 직종 자격증이 상호인정돼 국가공무원을 재직하고는 상호취업도 가능하다. 양국정부는 연 2회 이상의 경상회담을 통해 각양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고 있다. 92년 이후 독일공동군단(유리 코어)을 통설, 양측이 운전체로 시험관을 일어 활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도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할풍대사관 개념을 도입, 양국외교관들이 몇개월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엔 프랑스국민 독일국민이 기 전에 「유럽시민이라는 연대의식이 존재한다.」네오나치즘 국우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본위기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망령으로 취급되는 실점이다. 특히 지상인들은 나치독일



만여대
梁東七

이 저자는 빈민류 전쟁범죄에 대해 50년이 훌쩍 지나고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반성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 과거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 새출발할 수 있었을까. 2차대전 종전후 서독의 지도자는 아데나워였다. 그는 44년 히틀러 암살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던 반나치주의자로 새로 태어난 자유민주 독일을 상징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은 독일에 빠져든 수복된 알자스 르렌 지방 출신. 이웃과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유럽의 평화는 견원지간인 프랑스와 독일간의 관계만 원만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슈망장관은 절친한 동료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장 모네와 전쟁억지책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프랑스의 알자스 르렌 지방은 유럽 최대의 철강산지이며 독일의 푸르지방은 석탄산지이니

그리고 그들이 함께 협력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한

일 양국국민은 세계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두 주역으로서

생산적인 협력방안을 주구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시론

국제화와 인권

오 재 식

정치언어의 상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현기증 가운데 하나는 그 체제를 지탱했던 이념들이 공중에 매달린 가상구조물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사실은 모든 이념이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그 가상구조물에다가 많은 것을 걸었었다. 또 그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 각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들을 집약해서 받침대로 삼았었다. 자유, 인권, 정의, 평등, 민주주의 등은 그런 받침대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 받침대들은 가상구조물의 영구성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정치언어였다. 군사작전이나 경제행위가 그런 언어로 포장되었다. 냉전체제는 다름 아닌 보편적 가치의 우월성을 강점으로 생각되었으므로 한 나라의 실책과 독재와 부패 같은 것은 상대편에 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관용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냉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이래 정치언어로서의 보편적 가치들이 퇴색해버린 것이다.

성급한 헤겔의 후예들은 이것이 한 체제의 다른 체제에 대한 승리라고도 말하고, 그러므로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포장해온 보편적 가치들의 완성인 것

처럼 선전한다. 어느새 가치들의 보편성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냉전체제는 한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지만 양 체제를 지탱해온 것이 결국은 가상구조물들이었다는 자각은 낡은 체제의 신빙성도 의심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 그것이 표방해온 가치들을 지켜갈 의지와 힘이 남아있느냐.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자본주의 체제의 점을 더 무겁게 한 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는 보편적 가치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키면 되었는데 경쟁이 끝난 지금에는 그 보편성이 전인류를 시야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도전이고, 또 경쟁상대가 없이 혼자서 뛰는 경주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의 피곤을 보기 시작한다. 혼자서 뛰는 경주자의 피곤, 가치의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적인 진리를 증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피곤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미 도덕성의 경찰이 되기를 포기했고 얼마 전까지의 우방들은 경제적 경쟁국들이 되었다.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보듯이 군사적 작전과 전략에서 조차도 우방들간에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이 표면화되었다. 또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던 정치언어가 쇠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OECD 회원국들간의 정치적 동맹을 전제로 했던 경제협력은 그 틀이 바뀌어서 이제는 회원국들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단위국가의 실업률 증가와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타격을 더 입는다고 한다. 냉전 때 '자유진영'을 이끌었던 미국, 일본, 서구라파 제국들은 자기들 상호간의 경제체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빨리 변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타의 세계는 잊혀지고 있다.

정치언어의 상실이다.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상(가공)의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지탱했던 받침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도 새로운 구조물의 비전과 설계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중후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든다면 나는 ① 근본주의(원리주의)의 대두 ② 시장논리의 확대 ③ 민족·종족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겠다. 급속히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희교(回教)의 근본주의는 근본주의의 대두의 한 예로서 기독교적 세계주의의 언어로 무장해온 북대서양권에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하고 있다. 냉전의 가공구조물로 덮여서 보이지 않던 민족주의·종족주의도 활발하게 머리를 들고 있다. 시장 논리는 어떤가. 시장의 기능과 행태가

정치언어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 군사적 계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논리와 언어가 국민국가의 그것들을 스스럼없이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 논리와 행태가 국가이익을 우선시킨다고 해서 지탄을 받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주의적인 언어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인류를 공포와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적어도 과거 50년 동안의 정치구호가 이제는 퇴색되었다. ‘세계’는 이제 국가주의와 맞춰서 줄을 서야 하고 국가이익의 연장선상에서만 보이게 되었다. 세계는 다시 ‘국가연합’이란 줄은 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근대화를 밀고온 계몽주의 계획했던 근대화운동이 국가이익이란 벽에 부딪쳤다 하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근대화는 국민국가란 기본 부스타에 엄혀서 전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 번도 ‘세계’는 국가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세계’를 통해서 국가행위를 정당화해왔다. 이 역동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앞서 말한 가공의 구조물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난 후의 국가주의는 자체의 행위를 변호할 언어를 새로 찾아야 하게 되었다.

정치명분으로서의 국제화

요즘 항간에서는 ‘국제화’를 모르면 정치를 말라고들 한다.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 군사, 사회생활, 학문연구, 통신, 교통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국제화란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국제화는 이제 적어도 정치·경제행위의 명분이 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조국근대화’가 정치명분이었듯이 문민정부는 ‘국제화’, ‘국가경쟁력’ 같은 것을 내세워서 정부의 목표, 경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정부의 정치적 명분이 된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을 표방한 모든 행위는 우선순위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국제화란 국가들간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 기구, 제도, 관계 등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화는 국제사회를 지향해가는 방향성이다. 이 말은 또 우리 사회를 개방적인 사회로 만들고 국민을 국제관계에서 손색이 없게 교육시키며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의 뛰어난 회원이 되게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로운 회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른바 세계 열강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횡포를 겪어왔다. 약소민족의 아픔과 수난의 역정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열강들의 패권정치의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는가. ‘국가경쟁력’을 이 나라의 지상목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행정책임자들의 자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다. 국가목표를 국제경쟁력에 두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을 오도한다. 그 하나는 우리 삶의 가치를 경제 중심으로 매긴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부국강병을 국가이념으로 하던 군국주의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이다. 냉전종식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지향하는 수구적 세력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국제사회의 신참 회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역사의 찌꺼기들을 추켜들어 우리의 깃발로 삼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는 윤리도 도덕도 없는 돈벌이에 불과하다. 초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했던 이탈리아의 초기 상업자본주의에서 보는 긴장이나 막스 베버가 본 산업자본주의자들의 자기수련 같은 것은 제껴버리고 곧바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경제행위로 돌진하고 있다. 이것은 한 이념에 입각한 경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양심이나 거래에 필요한 신의조차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법에 의한 지도와 제제가 있다 하겠지만 법은 인간의 양심과 행태의 전부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다. 국제경쟁력이란 마치 정글과 같은 국내의 시장행위를 국제적으로 펼쳐가자는 것처럼 들린다. 경제를 물질의 교환을 통한 이윤획득으로만 생각하면 단견이다. 한 민족의 사회생활의 절도와 문화적 품위와 보편적 가치를 위한 자세들은 다 경제적 성과와 연계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외적 요소와 영역들을 다 국제경쟁력이란 구호 아래로 수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구라과 제국이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구호를 자주 쓰는 데는 시대의 기운을 오도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냉 전시대를 이끌어온 세계주의, '미개한 사회'를 문명사회로 이끌려는 구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인도주의적 가치들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계주의적 이상이 국제주의로, 국제주의의 광장이 국가이익들의 무한경쟁의 싸움판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된다. 국제정치의 언어는 당돌하고 노골적으로 되었고, 시장 논리가 그 언어의 핵을 이루고 있다. 나는 여기서 세계주의와 국제화를 구별해서 쓰고 싶다. 세계주의는 여러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질서, 또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바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때까지 세계주의의 비전은 국민국가에 의해 제창·주도되었지만 그것들의 관찰과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국제화는 말의 뜻대로 국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중대·유지해간다는 말이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국민국가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들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게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틀 안에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등의 권위와 정당성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열망을 잘 대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게 마련이다. 불의하고 부패한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그 대표권을 강변했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운영하는 기구들은 자연히 강대국가들의 조정과 영향과 나아가서는 조작 등이 횡행하는 판이어왔다.

그동안은 냉전이라는 협박체제가 이 판의 비리와 힘의 횡포를 얹제해왔고, 또 그런 과행들은 세계주의의 간판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 가공의 구조물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국민국가의 국가이기주의가 세계의 열망을 걸어질 수 있는가를 엄격히 물어야 한다. 이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대두해서부터 근 300여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아온 서구라파의 국가들이나 과거 반세기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민족국가를 세워가려는 후참 국가들이 다같이 대면해야 할 도전적인 질문이다. 역사의 전개과정은 후참자에게 시차의 결손을 보상받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 또 우리가 내세우는 국가가 앞서가는 국가들의 힘의 횡포를 답습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화란 정치적 구호는 얼른 듣기에 매혹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국민

의 호응을 받아 끌고갈 수 있을 만한 자체의 힘이 없다. 그것은 감각적이지 본질적이지는 못하다.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동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경쟁력을 키워 무한경쟁의 시대에 뛰어들겠다는 패기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국제화 게임'에 휘말릴 위험성이 더 많다. 국민경제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문제인 줄 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존도가 10% 안팎인 미국 같은 나라로서는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경제의 사활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반론하는 학자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바람 끝이 다르게 돌아갈 것에 대비하는 여유를 가져야 마땅하고,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의 명운을 거는 것 같은 조마심은 자제해야 한다.

세계화와 보편적 가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약하고 암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보편적 가치를 치켜들고 대갈했었다. 3·1독립선언문이 그것이다. 지금 세기말에 서서, 금세기 초에 나라를 잊고 밭을 구르던 선배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읽는 그 선언은 새로운 감명을 준다. 그들은 힘에 눌리면서 힘의 시대가 가는 것을 적시할 용기를 가졌다. 칠혹 같은 패권정치 아래서 새 천지의 개벽을 꿈꾸고 있었다. 포악한 침략자를 타일러서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충고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꿈과 용기와 기상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한때 우리를 억눌렀던 패권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런 세계가 올 것을 믿었고 또 그런 세계를 위해서 다짐도 했었다. 그로부터 75년, 그때 분명하게 보이던 세계는 없어지고 국가들의 깃발이 펄럭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세계는 시작되고 있고 펼쳐져 나아간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이제는 국가란 틀 속에 담아둘 수 없는 가치로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은 피난민과 아주

노동자의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 국내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 합의했던 인간의 권리가 현실로서 육박해온 한 예이다. 통신, 교통기술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을 산업화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규모는 혁명적이어서 우리의 생활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것은 세계정치에서 행동주체가 국가이던 것을 넘어서 그 주체의 다양화(多様化)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가 국가기관의 중앙통제를 거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가치판단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또 각 인간공동체나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동주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체들간의 관계가 다변화되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 안에 각양각색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고 바닥민중들의 열망이 있으며 전문기관과 조직들의 공헌도 있다. 그러므로 행동주체의 다층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원적인 주체와 그들 관계의 전개는 세계정치의 힘의 중심부의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까지의 '세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이제부터의 '세계'는 전혀 엉뚱한 데서 형성되어서 국가들의 기본틀에 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제공하고 지켜가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 달성이 곧 세계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단순등식은 경계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생각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국가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세워질 수 있고 또 국가의 운영이 세계 평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처럼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란 신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온 경험으로는 폭이 넓어지는 세계에 뛰어들기도 또는 그것을 수용하기도 힘들게 마련이다. 우리는 안으로는 획일적이고 밖으로는 폐쇄적이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는 지도자의 뒤에서 비굴하고 밖으로는 무작정 공격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화의 길은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세계화는 남을 젖히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길을 찾는 일이다. 그 길은 아집을 버리고 관용을 배우는 길이다.

오늘날의 환경问题是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그 문제는 국가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또 그것은 새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행위, 삶의 가치에 대한 태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물계, 자연계 모든 것과의 관계 등을 그 근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问题是 현대문명을 가로막는 '사이렌'의 노래소리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관문이다. 이 거창한 인류의 과제를 국가나 국가집단에만 맡겨놓기에는 허전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국가들의 행보가 세계 사람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정부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키느냐 또는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택하느냐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난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개의 우선 순위 사이의 적정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단순논리로 말하면 공업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회생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출자와 대책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설득할 만한 언어가 없고 도덕적인 압력도 약하다. 그래서 '세계'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명예로운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강인함과 창의력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세계를 잊어버릴 수 있다. 세계에 등을 돌린 국민의 역량이나 국민경제의 힘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하나하나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력의 궁극적 평가는 그 제품에 따르는 신뢰에 있다. 제품과 함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과 철학과 신념과 상징들이 전달되어야 한다. 꿈과 철학이라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끈기와 고집이 없이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공감을 살 만한 신념이 없이 어떻게 판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겪어온 쓰라린 과거사는 우리의 자산이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악했을 때 가장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듯이, 우리는 아직도 과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참 힘이다. 그런 힘을 고취하고 키워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상품을 떳떳한 세계시민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약한 자의 힘을 모르는 자는 강하지 못하다.

인권과 정치

카터 대통령 아래 인권은 미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시민권 제한, 인간 존엄의 무시, 시민적 양심의 억압, 협박·고문에 의한 고백 강요 등은 규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미국 해외원조의 중요한 조건으로 연계되어왔다. 그러나 이 원칙이 관행이 되어 반복되면서 각국 인권상황의 점수 매김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또 미국과의 경제교섭의 흥정거리가 되어왔다. 어느 새 인권문제는 그 독자적인 가치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온 점수를 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경제는 주객이 바뀌어서 경제적 타산에 맞추는 정치적 도구로 인권이 전락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 그늘에 숨어서 인권문제를 슬그머니 뒷전에 미루어놓은 것 같다. 아직도 광주사건의 책임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소양심수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사상범·장기수의 문제, 사면·복권에 미온적인 것 등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국제화를 떠들고 있다. 세계화는 고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해도 국가의 품위와 체통은 상품경쟁력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인권문제는 또 개인의 시민적 여러 권리에서 나아가 개인과 집단의 생존권, 개발권에도 확장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존권이 어느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인식은 보편적 가치의 기초이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원칙을 수행해갈 처방도 아직은 없다. 유니세프(UNICEF)는 금년도에 세계 어린이들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세계적 마샬 계획(Global Marshall Plan)을 세우고 이에 각 나라가 호응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마샬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황폐한 구라파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무상원조계획이었다. 우리 후손들을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부터 구출하자는 운동은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그러나 얼른 듣기에는 극히 비경제적인 운동이어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가장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기업이나 국가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귀

함과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모르는 경제행위는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궁지에 몰릴 것은 뻔한 일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한 정책입안자들의 계산은 알 길이 없으나 우리 기업이나 상사의 해외시장에서의 거동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문화나 풍습, 사회조직상의 예우 같은 것을 미처 터득하지 못한 저돌적인 판촉경쟁과 기업의 운영방식은 이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연안에 나가 있는 원양어업이나 시베리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벌목작업 등은 그린피스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새로운 세계는 오고 있고 그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감이 없는 '국가경쟁력' 캠페인은 머지않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국민족의 제품을 세계에 내놓을 때이다.

(기독교 사회교육원 원장)

됨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재벌에 지배받고 있는 현정부가 재벌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사법부만을 개혁의 대상으로 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누가 동조해주겠는가? 사법부자체에 의한 자발적인 개혁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법개혁은 명분조차 찾기도 힘들게 된다. 그래서 현정부가 사법부의 개혁을 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위신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재벌의 민주화에 대한 기본자세부터 고쳐잡아 나가야 한다. 사법부가 군부나 재벌의 횡포에 대해서 승리한 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힘에 굴복한 바도 없었다고 본다면, 재벌의 힘에 끌려다니는 현정부가 사법개혁을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를 상상해 보도록 하자.

특집 2 : 인권운동과 법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 그 7대 딜레마 (1)

이 대 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빈 세계인권대회 등 최근에 몇몇 중요한 계기를 거치면서 약간의 이론적 도전의 계기가 있었으나, 여전히 인권운동의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최근 현실이다. 한편 몇몇 국제회의의 경험과 유엔인권기구에 대한 제소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등의 국제적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국제인권규약 등 '보편적 규범과 법'에 대한 관심사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법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법부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과, 보스니아사태에서와 같이 무력하기만 유엔의 현실 앞에서 유엔을 통해 성립되어온 국제인권규범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되었을 때,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의해 인권은 엄격히 국내적 사안으로만 인정되었고 각국의 준수여부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의 역할은 거의 논외로 취급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당시 많은 나라들이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유엔은 1953년 유엔이 아무런 국제인권협약의 제정

66 특집 2 : 인권운동과 법

에 관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공표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가 형식적으로나마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승인하고 또 국내법적 효력화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또 6대 인권규약(국제사회권규약, 국제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이 세계인권선언을 풍부히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인권단체들도 방콕아태지역인권회의(1993년)와 빈 세계인권대회(1993년)에서 발표한 입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다. 김근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부당성에 대한 유엔 제소,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발표한 강력한 권고내용,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엔 제소, 아동 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의 공동보고서 작성 활동 등은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 평범위하게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과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은 인권옹호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논의의 촉발을 희망하는 바탕글이다.

이론적 빈곤에 따른 인권운동의 딜레마

탈냉전이 인권운동에 부여하는 변화요인은 무엇인가? WTO와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경제질서(이른바 새로운 '라운드'들)에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신세대의 탈정치현상 속에서 인권운동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을 에워싼 인권공방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공세적 정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인권의 언어로 가치규범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나라 안팎의 변화가 제기하는 문제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권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는 별로 없다. 때문에 사실상 인권운동상 접근하지 못하거나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67

자연스럽게 경시하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소수집단의 권리와 발전권, 환경권 등 집단적 권리의 범주는 뚜렷한 진보적 논의의 단초와 문명적 충돌이라고도 표현할 만한 쟁점을 담고 있다("Conceptual Problems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s", Human Rights Quarterly 17, 1995). 그러나 우리 인권운동상에서 이를 논의한 경험은 없다. 리우환경회의(1991), 사회개발정상회의(1995), 세계여성회의(1995), 제2차국제정주권회의(1996)에는 한국의 (광의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했고 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의 주제별로 제기되는 상당한 양의 다양한 인권논쟁이 충분히 소개되거나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안팎의 어려운 현실과 이론적 빈곤에 있다. 이론적 빈곤은 입장과 원칙상의 비일관성을 야기하며 이는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의 자기방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운동은 특정한 규범과 기준을 갖고 출발하고 또 그를 추구한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국제인권규약과 규범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처럼 언급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이 과연 보편적인가? 기독교 이외의 종교적 전통이나 비서구적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도 인권은 보편적인가? 한 사회와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논리적 모순은 없는가? 인권의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보편적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합의의 보편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론과 기본권 이외에도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의 내용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최근 발표된 국제적 인권선언에 과연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가? 개인의 권리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된 인권철학은 서구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닌가?

이론적 빈곤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주어진 실천적 도전의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출발의 지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로 관습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출발로서 현재의 인권운동이 처한 딜레마를 (1) 보편성의 딜레마 (2) 불가분성의 딜

레마 (3) 경제와 인권의 딜레마 (4) 연대성의 딜레마 (5) 안보와 공익성의 딜레마 (6)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주권의 딜레마 (7)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의 딜레마 (8) 남는 문제 등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정식화는 규정적이기보다는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제안의 의미를 갖는다.

(1) 보편성의 딜레마 : 인권의 보편성과 적용의 상대성

인권규범의 해석과 적용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요인들이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칫 인권의 유보 및 보편성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인권운동상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The UN's Human Rights Record: From San Francisco To Vienna and Beyond", Philip Alston,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인권규범은 쉽게 보편적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말할 때는 체제의 특수성이 암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지적되고 공식적으로 비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빈 인권선언에 나타난 애매한 합의에 대체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빈 선언은 그 내부에 치열한 논쟁의 절충과 회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독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특히 빈 대회에 참가한 우리 인권단체들의 대표단은 대부분 중국 등 개도국정부가 제기한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와 인권은 궁극적으로 주권국가 내부의 문제라는 주장을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한 것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

인권의 보편성 문제는 실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또 국제정치역학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히 결론내리고 접어두기에는 곤란한 문제이다. 보편성의 딜레마는 다른 딜레마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보편적 인권규범과 관련해, 유엔에 감독기관을 둔 인권의 양대 국제인권규약을 각각 120국 이상이 비준한 사실 자체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보편성 확득에 성공했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빈 인권선언의 39개 문항 중에서 4개의 문항(1, 5, 32, 37문단)이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할애된 점에서 형식적인 합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Christian M. Cerna,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실제 적용상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이슬람국가들처럼 개인적 영역에서의 생활규범이 종교적·관습적으로 강하게 규정된 사회에서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성은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또는 특정 사회에서의 보편성 상실을 일단 인정한 이후에 보편성 원칙은 더욱 더 강조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보편성은 허상인가 또는 서구적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보편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부 불가침(non-derogable)의 기본 인권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기본 인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인권법주를 기본 인권에서 소외시켜 결국 보편성의 부정을 허용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빈 인권선언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연 인권은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는 명백한 절충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즉 요약하면 '현재 국제인권규범은 서구적인 것이며 서구적인 가치규범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주권침해로 연결된다'는 주장(Por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Region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in Africa, in the Americas and in Europe, Friedrich-Naumann-Stiftung, 1993, Strasburg)도 보편성문제를 국가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빈 세계인권대회의 핵심 논쟁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또다른 기원으로 좌파의 전통적 인권론이 있다. "자유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때에야 자유는 부르조아적 관용 이상의 진정한 자유가 된다"(영국 노동당의 해롤드 라스키, The Review,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No.50, 1993에서 재인

70 특집 2 : 인권운동과 법

용). 프랑스혁명 이후 반복된 "빵과 자유" 사이의 갈등이다. '빵'은 국제규범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적 반론은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형식적인 국제적 합의가 진행되면서(대표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의 문제는 지구 남북갈등 속에서 개발과 경제적 권리의 언어로 부활한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한 민간단체가 폐낸 진보적 인권교재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권페러다임이 갖는 문제로서 사회권에 대한 경시와 국가중심의 인권침해 규정을 들고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불인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의한 인권침해의 불인정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Initiating Human Right Education at the Grassroots,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1993). 즉, 인권의 보편성은 사회권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성 논의에는 규범상의 논의와 적용상의 논의에서 충돌이 있으며 그 충돌은 인권의 종합성과 불가분성 사이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2) 불가분성의 딜레마 : 시민·정치적 인권범주와 경제·사회·문화적 인권범주의 동등성과 불평등성

원래 종합적이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서구사회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때문에 이 두 범주의 권리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를 밟아왔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국내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발전한 것과는 달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은 대부분의 국내법이 국제법에 못미친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적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내외 인권운동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정치적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적 인권을 동등하게 위치지우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Philip Alston, 위 자료). 사회권의 인권적 위상을 부정하고 시민·정치적 권리

를 인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방의 자유주의적인 인권론자들의 역할이었지만, 우리의 인권운동 현실에서는 독재국가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와는 반대의 각도에서 시민적·정치적 인권이 실천적으로 상위를 점한다. 그 결과로 사회적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계층의 특수한 문제로, 예를 들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 여성의 복지문제, 노인의 연금문제, 장애인의 복지문제 등으로 접근된다.

불가분성의 딜레마는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비민주적 정부의 입장을 비판할 때에도 나타난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홍미로운 기현상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발전을 인권보장으로 접근하려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국과 77그룹은 공교롭게도 함께 반대했다. 경제·사회적 인권을 서구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인권의 일종의 종합으로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77그룹에 반대해서 공동의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각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벌이던 사회권단체들에게는 협력대상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파탄이다. 즉 현실에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럴 때 각 그룹 정부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비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불가분성은 추상적 원칙일 뿐 현실적으로는 공허하지 않다는 문언이 제기된다.

더 가까운 현실에서도 불가분성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3세계국가 중에서 매우 활발한 대유엔활동을 펼친 필리핀의 전국인권단체협의회(PAHR)도 그 구성단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심활동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권리들은 지역단체와 개발단체(development NGOs)로 자연스럽게 분담되었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불가분성에 대한 원칙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3세계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은 유엔의 양대인권규약의 분리만큼 분리되어 있고 또 그만큼 개인적 인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경제·사회적 관심사는 인권적 접근이라기보다 체계론적이고 그

러므로 집단적 권리를 주로 다룬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 인권단체와 3세계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관계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평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과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경제전쟁시대의 딜레마 : 인권운동과 경제의 분리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제도상 또 인권운동상 소홀히 취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여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든 재원조달의 우선권 논란, 외채 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 국제금융기관 등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사회권에 대한 경시가 함께 작용한다. 아울러 '인권운동'이 시민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문제를 직접 논의한 바가 거의 없으며, 최근까지 '권리의 연대'(특정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형 연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사회권 분야의 사회운동은 인권운동과 별개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회권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는 재원의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권규약 제2조는 규약가입국의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모순된 두 개념의 절충적 충돌일 뿐이다. "최대한"이라는 것은 이상적 목표를 의미하지만 "가용"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 국가는 항상 후자를 방파로 전자를 막아낸다("Mea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Devote the 'Maximum Available Resources' to Realiz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재원의 동원에 관한 지표가 필요하지만 인권법의 전문가들이나 인권단체에서 이러한 지표

를 개발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권관련 단체들의 연대활동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지난 5월 1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낸 첫 권고문에도 "한국정부가 사용가능한 재원을 염두에 둘 때 ㅇㅇ이 부족하다"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가능한 재원'에 대한 추상적,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시회권규약상의 개념적 절충성은 사회권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허용은 국가가 안보 및 공익을 이유로 한 재원왜곡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첫째 재원이라는 무엇인가(재원이란 단순히 국가예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권의 보호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를 들면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정보자원, 자연자원, 재정자원 등), 동원할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정부가 사회권보장을 위해서 재원을 동원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이상 위 자료). 즉 사회적 인권운동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즉 피해자들의 존재와 아울러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용한 최대의 재원과 재원왜곡에 대한 인권운동의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것은 인권과 경제 및 기타 연관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이념을 대신할 '세계화'현상을 염두에 둘 때 인권에 연관된 경제적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단, 재원과 관련된 경제적 검토는 이미 교육개혁, 사회복지개혁 등 사회권분야에서 이미 분산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즉 사회권 범주에 기반을 둔 종합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는 재원을 동원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가 다른 사회의 인권보장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또 그래야만 특정 정부의 정책을 지표를 갖고 합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인권의 연관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론과 개발-

인권 연계정책(conditionality)의 문제이다. 유럽의 사회적 덤프(social dumping)규제 움직임, 이른바 블루라운드의 무역·노동권 연계정책, 경제개발지원과 인권 및 환경권의 연계정책은 그 내용상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선진국 대자본의 기술적 경제적 우위와 지배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연계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적용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 논쟁과 선진국의 경제력에 의한 약소국의 주권침해논쟁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 인권의 경제적 연관성을 국제경제 구조에 비추어 고려할 때 '주권을 넘어선 보편적 인권'을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밖에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현재의 국제경제질서 및 선진국의 경제적 압력을 중요한 이유로 해서 온전한 개발정책을 취하기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쉬운 처지에 있는 현실, 시장개방, 실업 및 지적소유권 독점 등 경제구조재조정에 따른 대량의 경제적 인권 침해의 현실은 과연 국제적 경제불평등과 인권보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재고하게 한다.

(4) 연대성의 딜레마 : 인권 네트워크운동의 확장성과 그 제한

이상의 딜레마는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 이기도 하다. 즉 인권운동의 대중화와 확산의 계기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권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단체들간의 '권리의 연대'가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다. 빈 세계인권대회 이후 창립된 인권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포럼,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을 이끌어낸 사회권연대모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복지는 곧 인권'이라는 문제제기, 아동권조약에 관련된 아동권단체 연대모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모임, 외국인노동자 인권 공동대위,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모임, 주한미군 인권침해 공동대위, 환경운동의 환경권 소송운동 등 그야말로 분야별 인권을 중심

으로 하는 연대 네트워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연대모임은 아직 인권운동이라는 하나의 대중적 행동양식으로 정식화되고 있지 않다. 인권네트워크운동의 현실적 확대와 범주상의 불일치는 인권운동이 취해야 할 연대성의 원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야기된 딜레마 중의 하나이다. '인권운동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일부 제한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노조와 여성단체, 환경단체도 실은 모두 인권단체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의 인권운동 및 인권단체에 대한 범주설정이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포괄성 대신에 개방적 연대성을 축으로 범주설정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인권·민주주의·개발이라는 3위一体의 문제의식이 일반화됨으로 인해서 인권과 다른 범주 사이의 연대성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 원칙이 서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이를테면 사회개발정상회의나 인구회의, 정주권회의 등 거의 모든 국제모임에서 인권문제가 하나의 필수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단체들을 포함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처방식은 독립적 비연관적 대응이 주류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 핵확산금지협정(NPT) 기한연장회의에 참석한 평화운동단체들은 인권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서 작성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펴보면,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은 심지어 국가적 공공적 위기상태에서조차 침해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반핵의 인권적 기초로 인용된다.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도 "핵무기의 설계, 실험, 제조, 소유와 배치는 오늘날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에 속한다"라고 선언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984년 11월, UN Doc. A/40/40).

최근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실상의 인권활동 속에서 인권적 담론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쟁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이론적 빈곤을 배경으로 한 조정과 연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인권네트워크운동 사이에는 일정한 철학적 기반과 연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권리의 연대' 방식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운동의 특징을 개방성과 네트워크형 조정력(coordination)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인권운동 속에 수용하는 노력과 조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조정력에는 이론적 풍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권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모임에도 앞으로 큰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호 긴밀히 연관된 안보와 공익성의 딜레마,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주권의 딜레마,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의 딜레마, 남는 문제,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이 있으나 지면사정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이 성 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원

1. 유엔 인권위원회란?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6주동안 제네바에 있는 유엔 센터에서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열렸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위원국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는 올해가 유엔 창립 50주년이고 93년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임명된 조세 아얄라 라소(Jose Ayala Lasso)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첫 연례 활동보고서를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유엔의 모든 기구를 인권관련기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는 헌장(Charter)에 기반한 기구와 조약(Treaty)에 기반한 기구 두 가지로 나눈다.¹⁾ 헌장에 기반한 유엔 인권기구는 구체적인 개별조약의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 반면 조약에 기반한 유엔 인권기구는 구체적인 조약가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자는 보다 정치적이고 후자는 보다 법적이고 성격을 지닌다.

전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1) 유엔과 인권, 12-19쪽. 유엔과 인권제도교육 자료집, 한국인권단체협의회, 1994.

○ 특집: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동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하여

백영서

1. 머리말

동·서양이라는 두 세계의 문화적 거리를 메우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1991년 1월 미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린 중국 여성문제를 다룬 학술회의장에서 본 장면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로 필자에게 떠오른다. 미국인 여성학자가 중국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의 '잔인한' 사례들을 소개하자, 방청석에 있던 중국대표 중 한 여성은 그것이 국외자의 피상적인 견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산아제한을 위한 여러 조치야말로 중국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통역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논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만큼이나 그 평행선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 필자는 그런 갈등이 주로 정치체제나 이념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밑바닥에는 문화적 차이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치체제와 문화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올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대우 연장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33

시기를 맞아 인권문제를 놓고 중국과 벌인 인권논쟁과 그에 대한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정부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 미국 청년(Michael Fay)이 수십 대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금과 더불어 6대의 곤장(笞刑)을 맞도록 선고, 확정하였는데 그 벌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보여준 대응방식의 차이도 같은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다.²⁾ 이것은 이 '페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 「미국적 가치를 강조할 때」³⁾가 응변하는 바 동서간의 가치관·문화관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는, 근대사에 대한 체험 그 자체에 '진인한' 심각한 '챙점'이 아닐 수 없다. 인권문제는 한층 깊이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할 때 출발부터 부딪치는 난점은 '인권' 개념의 모호함이다. 인권운동가들에게 일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제거하는 실질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자명한 인권 개념으로 부각되겠지만, 그것이 서구인들의 경험에서 연유된 편협한 관점이란 지적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권 개념은 '좋은' 정부의 조건이나 인간다운 삶의 질 같은 추상적 주제와 연결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논의 당사자간에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이유로 견해가 엇갈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인권운동가의 실질적 과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는 인권 개념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결합될 필요가 절실히다.⁴⁾

인권문제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낡은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 진요함은 지난 여름 우리 언론에서 벌어진 북한의 인권문제 공방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절감했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 어느 쪽도 협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1)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대체로 미국의 대응에 바탕적이었다. 「미·싱가포르 '태평양'」, 「미소년 '태평' 파장」, 「조선일보」, 1994.4.15; 5.13. 「미국의 아시아정책」, 「한겨레신문」, 1994.5.19 참조.

2) "Time to Assert American Values", *The New York Times*, 1994. 4. 13.

3)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인권의 철학적 기반을 새롭게 부여하려는 시도로는 Michael Freema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1994) 참조.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권의 세부항 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 규범(예컨대 UN의 여러 인권관계 문서)과 해당국의 규범(예컨대 헌법) 및 경험적 실제 삼자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⁷⁾ 이 경우 경험적 실제에 대한 접근과 평가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연구자라면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인권문제를 다룰 때 있어 위의 '독자성'을 찾는 일이 어느정도 가능해진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란을 넘어 평행선을 달리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동일한 수준에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열릴 것이요, 따라서 그들 각각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단서란 주어진 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필자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꼼꼼히, 특히 그들의 설명하는 방식에 유의하여 재구성하는 일부터着手하고 싶다.

2. 중국 인권논쟁의 경과와 주요 쟁점

중국공산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헌법이나 법률에서 광범위한 공민권을 규정한 내용은 있었지만 '인권'이란 용어가 새삼 출현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정치전환의 방향을 잡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 이후였다.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은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정치적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당의 4개 현대화 정책에 더하여 '제5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인권의 보호를 거론하자 공식적인 매체에서도 인권논의를 벌임으로써 '인권'은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주된 논의는 인권이 자산계급의 구호라고 비난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1988년 '세계인권선언' 통과 40주년과 프랑스대혁명 승리 및 '인권선언' 발표 200주년을 맞이해 또다시 인권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1989년을 거쳐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인권논의의 범위와 내용이 바뀌었다. 그 배경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의 인권문제를 앞세운 압력과 더불어 동구권 몰락으로 인해

4)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로는 Ann Kent,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89", *Human Right Quarterly* 13 (1991) 가 있다.

주의적 인권은 무산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한 '절대다수인이 향유하는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이다.⁸⁾ 인권의 주체를 계급집단으로 파악하는 이와 같은 중국의 전통은 서방세계 지식인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백서가 내세우는 생존권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핵심인 노동권이 오히려 직업 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측면을 비판한다.⁹⁾

각각 (법적·정치적 차원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차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견해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인가. 백서에서는 그같은 이론적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인권론은 자유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형식적이라면 평등은 전적으로 집단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귀에 익은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런데 백서를 좀더 꼼꼼히 읽어보면, 개방 이후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이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이미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공정권 성립 이후 도시의 취업희망자는 정부 앞선에 의해 모두 안정되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1979년 이후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종의 소유제경제' 아래에서는 국가의 조정과 개인의 자유선택이 결합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는 실업자는 그 결합이 행복하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¹⁰⁾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국가가 각자의 수요와 당사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모든 개인에게 적합한 직장을 안내하여 실업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정확한 실업자 수에 관한 정보 등은 알기 어렵지만, 취업했다 해도 그에 만족하는지도 문제이다. 더욱이 날로 높아가는 소비추세에 따라 '제2의 직업'을 갖는 개인이 늘고 있으며, 자신이 소속한 기초작업조직인 '단위(單位)'를 벗어나 자유로이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원)단위에서 가져온 '신상명세문서(檔案)'를 어딘가의 단위에 맡겨야 하는데 당장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맡아주는 '인재교류중심(人才交流中心)'이란 기구가 출현한 현상은 경제변화와 정치통제의 어중

인권문제에 대해 종래처럼 소극적 자세로 입할 수 없다는 당의 방침이 있았던 것이다.¹¹⁾

체제옹호를 위한 이론무장을 위해 강택민(江澤民) 총서기가 '인권문제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에 관한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여러 매체와 학술 기관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그 절정은 「인민일보」 1991년 11월 2일자에 발표된 이른바 「인권백서」(이하 백서로 줄임)이다.¹²⁾ 백서의 기본시각을 담고 있는 '전문(前言)'을 보면, "중국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일찍이 여러가지 좌절을 겪었다. 현재 인권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데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존재한다"고 현상황을 규정한다. 또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국가주권의 범위 안의 문제이다"고 주장한다. 종전과 달리 인권문제를 야기한 현실을 부분적이거나마 인정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으로서, 그 초점은 "중국인민은 자기의 역사와 국가형편(國情)으로부터 출발한 장기적인 실천경험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했다"는 데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쌓아올린 성취를 상세한 통계숫자를 들어가면서 부분별로 나열한 것이 '전문' 이하의 10개 절인데, 지나칠 정도로 많은 통계숫자가 오히려 설득력을 해치는 백서를 통해서는 중국 인권상황의 실상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들이 인권문제를 설명하는 틀이 더 흥미를 끈다. 첫번째 절 「생존권이 중국인민이 장기간 싸워 얻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라는 대목은 반제·반봉건투쟁을 전개해온 중국공산당사의 요약판인 셈인데, 보기에 따라 의미심장할지도 모르나 판에 박힌 정치선전으로 비쳐 전너뛰어 읽기 심상이다.

(+) 그런데 바로 이 「생존권」이야말로 인권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동서간 논쟁의 핵심요소로서 개인의 인권과 구별되는 '집체인권'을 뜻하며,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溫飽問題)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인민의 생존권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것은 다 알다시피 일차적으로 맑스주의를 이론적 무기로 삼고 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인권이란 시민권이고 그 실제적인 적용은 사적 소유자에 한정된 자산계급의 자유권에 불과한 '기만성'을 갖는 데 비해 사회

5) 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當代人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375~78면.

6) 王海峰著『中國的人權』, 朝鮮日報社 1991, 11~12면.

간한 절충이 이뤄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말해준다.

중국이 자랑하는 생존권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색도 필요합작한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아직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여기서 서구 맑스주의의 새로운 해석 가운데서 양자의 거리를 좁히려는 지적 노력이 주목된다. 필자의 좁은 시야에 들어온 것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상호매타적인 제한적 권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증식적인 확장적 권리의 관점으로 옮아감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접합하려는 시도이다.¹³⁾ 적어도 이같은 이론적 쇄신을 위한 노력과 이에 촉발된 정책적 개혁이 수반될 때야만이 격변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중국의 인권관이 한결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맑스주의의 새로운 시도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인권관에 규약들은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주장한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는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른바 B규약)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단의 생존권을 옹호한 「사회권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1966년 채택)과 「발전선언」(1986년 채택)을 채택해 이미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다. 물론 개별 회원국들이 이들 규약에 모두 가입해 준수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고 남북의 국가들간에 각기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인권의 '보편적인' 기준을 선언한 의의는 결코 경시될 수 없다. 현재 어느 국가도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국 역시, 비록 이를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백서에 밝혀져 있듯이 국제규약에 긍정적이다. 특히 「사회권규약」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서방의 압력을 막는 방패로 잘 활용된다. 이같은 입장은 (뒤에 상세히 언급되듯이) 체제를 달리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 종종 옹호된다. 여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생존권 또는 집체인권에는 계급적 성격 이외에 민족주의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존권 다음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에서 주목할 요소는 주권에 대한 강조이다.

10) 세미엔 베리미트,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민족주의, 『한국일보』, 『밀리터리 아시아』, 민족 1991, 『밀리터리』 평등과 자유가 경쟁관계에 있기 있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유럽 밀리터리, 「시민·민족주의의 권리」, 『한국일보』 1991, 11~12면.

7) 郭偉, 「論人權」, 『文史哲』, 1989-6.

8)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a", *Current History*, Vol. 93, No. 584 (September 1994), 258면.

9) Kent는 일의 글, 201면에서, 1982년이 신제이 시하복지를 실현시킨 시기에서 이전에 김시진이라고 기록된다.

다. 걸보기엔 큰 차이가 없지만 백서 공포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강조점이 계급보다는 주권으로 미묘하게 옮아가고 있는 것 같다.¹¹⁾

중국이 인권과 관련해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인권 공세가 사실은 동구권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전제하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을 평화적으로 진복시키려는 이른바 '화평연변(和平演變)'의 음모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백서에서 미국 등 서방을 꼬집어 비난하지는 않지만 "세계에는 중국의 정황을 친정으로 이해 못하는 편견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구절 같은 것은 그리한 정서가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다.

사실 그러한 의구심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자신의 인준을 위한 청문회 연설에서 동구권이 몰락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미국의 세 가지 외교정책의 기조의 하나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파를 역설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기술 수출과 인권침해 및 무역불균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폭넓고 평화적인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도록 촉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¹²⁾ 그리고 1993년 6월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¹³⁾를 1년 더 연장해주면서 1994년의 연장조건으로 7개 항에 걸친 인권문제의 개선을 내걸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무부가 점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한 셈이다.

중국측은 이것을 '폐권주의적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였다. 그 주요한 방 깨는 역시 주권이다. "국권 없이 인권 없다"는 말에 암축되어 있듯이, 주권은 반제투쟁의 성과로서 대외적 독립주자와 대내적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나 중국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무엇에 의해서든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국제인권규약보다 우위에 서며, 인권은 자국의 현

11) 諸偉의 위의 글과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자신이 발표한 「再論人權」, 「文史哲」, 1992-4를 대조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12) Christopher의 1993년 1월 13일자 중언 속기록.

13) 무역최혜국(most favored nations) 지위는 미국 정부가 가트협정에 따라 교역상 대국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특권이지만, 북한·베트남·쿠바 등 공산권 국가들은 예외로 취급했다. 중국의 경우, 가트회원국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따라 양국 국교정상화 다음해인 80년부터 최혜국 지위를 누려온 특별케이스라 할 수 있다. 단 미국 국내법에 따라 해마다 이를 간接해왔는데, 지난 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은 그 연장에 인권개선문제를 언급시켰다.

는 한편 중국의 인권문제와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국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를 연계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의 기자회견에서의 설명이었다.¹⁴⁾

이상과 같은 미국의 인권외교의 추이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인권외교를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 자체가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인권외교의 가장 침에한 관심사인 '정치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어도 주권을 앞세우고 있다. 백서는 "중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는 항목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에는 단지 사상만 소지할 뿐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른 정치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이른바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형법이 규정한 '반혁명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한 범죄로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폭동·간첩행위 등 형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어느 국가나 처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중국의 주권이란 한계선을, 3,300명의 '반혁명분자'의 신상을 밝히고 교도소에 국제적십자 대표가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등의 인권운동단체의 요구¹⁵⁾가 넘어서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백서가 말하는 '혁명'의 정당성 즉 현존하는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양심수로서 파악하고 인권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일부 지식인 및 중국인 민주화운동단체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것은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전제한다. 아니, 중공체제의 몰락을 희구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정확하겠다. 그렇다면 공산당정권이 무너지-

14) 『한겨레신문』, 1994.5.28.

15) Robert L. Bernstein & Richard Dicker, "Human Rights First", *Foreign Policy*, No. 94(Spring 1994), 46면.

20) 이와는 정반대로 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믿는다면 인권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 89년의 천안문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의 한 극단에는 학생의 '반혁명적 시도, 자본주의로의 복귀'로 규정하면서 중국정부의 유혈진압을 불가피한 조치란 관점에서 신뢰하는 경향도 있었다. '노동자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일동(R.S.I.)', 『최악무의 대루개』(1989.6.27)(미공간 퍼플넷).

법과 각종 입법조치에 의해 보호될 따름이라는 것이다.

주권에 대한 강조말고도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서 미국이 자국내의 인권침해에 합류한다든가 이른바 우방이나 맹우(에킨데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간접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일관성 결여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¹⁷⁾

미국의 인권외교가 위의 크리스토퍼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동구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를 미국 주도 아래 새롭게 짜보려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인권외교의 적용 대상국들, 예컨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 일부로부터 미국적 가치관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일리가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 한국인 민간대표는 인권문제가 "불록간 외교전술로 사용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⁸⁾ 미국 내부에서도 클린턴정부가 표방하는 인권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서울과 북경의 주재대사를 지낸 릴리는 인권문제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중국에 다른 아시아국가가 동조해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우려가 있으니 만큼, 무역·무기화산·문화교류처럼 중요한 문제와 연계해 중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무역의 확대를 통한 중국인의 생활수준의 향상만큼 효과적인 중국의 인권 압력이 있다고 강조한다.¹⁹⁾ 정치가인 릴리보다 폭넓게 사고하는 중국정치학자 바네트도 "조용한 외교" 애말로 중국의 인권신장의 관건임을 역설한다. 미국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는 — 역사적으로 미국의 선교정책이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교육·의료 등 문화적 교류를 통해 효과를 올렸듯이 — 민간교류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통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그의 주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²⁰⁾

이같은 비판과 인권 개선을 강조한 자신의 선거공약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5월 26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연장하

14) 이상은 鈞文宗, 「論英國的"人權外交"」, 『國際問題研究』, 1993-3.

15)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7호(1994), 15면.

16) James Lilley, "Freedom Through Trade", *Foreign Policy*, No. 94(Spring 1994).

17) Doak Barnett, "Quiet Diplomacy Key to China Rights Progress",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생한 1994년 4월 14일자 강연 내용.

기 전까지 인권문제는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물탁을 재촉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현실을 무시한 관점이지만, 그 현실 자체는 인권이 주권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방 이후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긴밀히 얹혀들수록 (또는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한)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불간섭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를 북경에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된 결과 끝내 그 국가적 열망이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상 —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대만맛' 또는 '홍콩맛'이 선망의 대상되어 있는 요즈음이다²¹⁾ — 은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위의 백서에서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선언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중국의 주권론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의해 도전받는 것 못지않게 주권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접근에 의해서도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의 국제법에서는 적어도 인권과 관련해 주권의 상대화가 부분적이나마 이뤄지고 있다. 극히 제한된 경우 — 종교적·인종적·언어적 소수자의 보호 같은 — 이지만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신해 '인도적 간섭'이 허용되는데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간섭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지금으로서는 천안문사태나 그에 대한 뒷처리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제적 범죄'로 간주되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제지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실제로 경제제재에 시방 어리 나라가 동조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중국이 일련의 인권규약에 가입한다면 그 압력은 더욱 키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권이 기본원칙이고 국가의 역할도 여전히 크지만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 즉 주권과 관련해서만 보지 않고 국내적·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개인주체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인권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인간이

21) 민두기, 「개헌중국의 뒤안 ①」, 『한겨레신문』, 1994.2.18. 이 기행문을 쓴 민 교수와 동행했던 필자는 호남성 시골의 장례식 행렬에서 망자에 바치는 예물의 하나가 홍콩에 이불인 것을 그 포장봉투로 알 수 있었다.

라는 시각을 새삼 확인해두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이 생존권 내지 발전권을 중시하는 것도 인권 일반을 존중한다는 논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적 인권의 보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²²⁾

주권의 상대화는 국민국가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한층 더 실감이 난다. 다국적자본에 의한 개별 국가기구의 통제력 약화, 지역별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까지의 진행, 각종 국제기구들의 영향력 증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 반체제운동들의 초국가적 연대관계의 증진 등 (좀더 나열할 수도 있을) 추세는 "국민국가를 사회구성의 기본단위가 표본으로 삼는 발상이 당연시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²³⁾ 물론 이런 주장이 현시점에서 국민국가 무용론이나 국가기능의 무조건적 약화를 말하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발상에서 나왔다면 무모하지만, 기존의 "국가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기구의 민중장악력의 약화"를 통해 세계체제의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의²⁴⁾라면 적극 수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민국가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사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⁵⁾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배타적인 의식과 행동을 강요하는 국민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가 약화된 국경선 안의 다양한 요소의 공존과 국가의 틀을 넘어서 한층 넓은 범위의 공동성을 함께 추구해 나갈 정치공동체의 구상은 중국의 현실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티베트의 반발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소수민족의 권리 주장, 지역권 경제 및 사회의 활성화, 당-국가 주도에 비판적인 자율적 사회세력의 대두 가능성, 대륙 밖의 중국인·중국계인(특히 대만과 홍콩 주민들)의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체제 자체의 구조변화 등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연방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일각에서 거론되어 흥미롭다.²⁶⁾

22) 土屋英雄, 「中國の人権と主権」, 『中國研究月報』, 1993. 3.

23) 배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 사 1994, 35면.

24) 배낙청, 같은 글 및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 『창작과비평』 1994년 가을호, 특히 256면.

25) 이대훈, 앞의 글, 21면.

이같은 조짐은 인권과 주권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상투적인 논의를 넘어서 인간 개인에 가장 질실한 인권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열도록 촉구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3. 중국의 인권론과 아시아적 상황

중국의 인권론에 대한 검토가 인권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백서의 문면을 통해 논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에 대한 그들의 체험의 몇 가지 특징으로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은 백서의 인권론의 밑바탕에 드리워 있기에 이미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이긴 하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인들은 반제·반봉건을 과제로 싸워온 근대사에서 중국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설명률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UN이 제택한 「발전권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발전국 또는 개발도상국 저개발의 원인을 남쪽에 불리하게 형성된 국제질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리다 보니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포함한 민주주의의 신장 역시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이룩된 다음에 달성할 과제로 설정된다.

그린데 경제발전이 인권신장,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은, 중국당국과 정반대의 정치적 위치에 선, 미국의 이른바 보수적 인사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 미국대통령 뉴턴이, 유럽에서 부르조아지의 발전만이 인권의 유지를 담보하듯이 중국의 개방적인 교역을 지속시켜야 번영의 추진력과 중산층의 성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경제결정론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²⁷⁾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릴리는 인권외교를 비판하면서 이 점을 좀더 명확히 제시한다.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입을 촉구함으로써

26) 더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번용」(1993년 5월, 전국여사학대회 발표문) 참조.

27) Samuel P. Huntington, "The Islamic-Confucian Connection", *New Perspectives Quarterly* (Summer 1993), 22면.

미국은 민주주의세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시킨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합작기업이야말로 수도 있는 침박과 조치 및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건들보다 남부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 예컨대 중국의 번영하는 남부에서는 공산주의가 통제하는 '단위(單位)'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위성텔레비전·전자통신·활자매체에 의해 가능해진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²⁸⁾

'부르조아지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배링턴 무어의 유명한 명제를 연상케 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한 관리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어설프게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회혼란만 초래한다면서, 마르코스 이후 필리핀의 민주화가 실상은 경제적 약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한다.²⁹⁾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한 미국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동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미국의 인권정책은 탈냉전 이후 친소진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더 과감하게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자 할 때 비용이 덜 들면서도 월씬 손쉽고 인기있는 방법이라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이 도구로 쓰이는 이같은 사례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을 최혜국대우와 연결시킨 것은 경제경쟁의 도구로서 인권을 활용한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서면, 필리핀의 사례뿐만 아니라 구소련도 폐레스따로이 까라는 민주화조치를 선행하다 결국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모두 아시아의 발전모델의 유효성을 역으로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³⁰⁾ 결국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에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재평가——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을 중시한 개발독재정론——가 고개를 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요하지만 여기서는 중국상황에 관련된 두 측면에만 주목하고 싶다. 첫째는 중국이 누리는 오늘날의 경제

성장의 대가로 치러진 막대한 희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1958~61년간의 대약진운동 기간에 1천5백에서 3천만명 가량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중앙보고조차 거짓된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중앙이 알았지만 모택동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이 구호사업을 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사치품'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³¹⁾

둘째는 경제성장이 과연 중국에 인권신장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경제개혁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는 시장경제가 좀더 자유로운 정치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므로 인권문제를 뒤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중국 안팎의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유시장이 주도하고 중산층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자유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 성취는 좀더 힘든 과업을 요구할 것이다"고 한 중국인 민주화운동가는 말한다.³²⁾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논쟁적인 개념이므로 중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를 따지는 기준이 되기엔 적절치 않다면, 경제성장이 상업주의를 초래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분명한 현상이므로 이것이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인가라고 바꿔 물어볼 수 있다. 중국에서 (적어도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눈에 띠는 풍부한 소비재의 범람이 '소비자로서의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명언이 가능하다고나 할까.³³⁾ 특히 텔레비전의 상품광고는 홍콩이나 대만 등지의 영향이 역력한데 그 광고에 제시된 세계는 대개 이상적 가정이나 개인을 소비자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생활양식 자체가 공산당의 공식적인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엄청난 '반체제'적 언사가 광고의 소비풍조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당국에서 아무리 사회주의적 정신문화를 주입하려고 해도 세대

28) James Lilley, 앞의 글, 40면.

29) Bilahari Kausikan, "Asia's Different Standard", *Foreign Policy*, No. 92(Fall 1993), 35면.

30) 田中義晴, 「人権に国境はあるのか」, 『世界』 1994년 9월호, 243면.

31) Aryeh Neier, "Asia's Unacceptable Standard", *Foreign Policy*, No. 92(Fall 1993), 45면.

32) Wu Jiang의 발언, James D. Seymour, 앞의 글, 259면에서 채인용.

33) 이 표현은 Geremie Barme, "Soft Porn, Packaged Dissent, and Nationalism:

Notes on Chinese Culture in the 1990s", *Current History*, Vol. 93, No. 584(Sep-tember 1994), 272면의 "I shop therefore I am"에서 빌려왔다.

간·이념 간의 격차는 둘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아이러니와 냉소주의가 빙자기 쉬운데, 이것들은 실제로 90년대 초 문화계에서 유행하는 풍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상업주의의 변창을 일부 지식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글을 쓴 도중 필자가 광주(廣州)에 들을 일이 있었는데, 경제선진지구인 그곳의 지식인들은 캠퍼스에서 빠삐를 차고 다니며 장사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질 정도로 돈벌이 풍조가 그들에게 필요한 '비판정신'과 '진리전파의 책임'을 잊어버렸다고 개탄하고 있었다.³⁴⁾ 중국 전역에서 간행되는 잡지들에서 다루는 근래의 주요 쟁점의 하나가 '인문정신의 위기'란 점도 그런 우려가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³⁵⁾ 심지어 한때의 민주화운동가가 이제는 사업가로 변신한 사례도 적지 않다.

³⁶⁾ 미국에 망명중인 저명한 반체제운동가 유빈안(劉賓雁)은 이런 풍조가 오늘의 중국사회에서 "가장 가공스럽고 비극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한다. 중국문화에 스며 있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전통적 감각이 쇠퇴한데다 외적 통제력(공정한 법집행, 신뢰할 만한 정치적 권위, 건강한 사회환경)이 결여되어 상업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정직과 신용 대신 사기와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그는 천안문사태에 참여한 민중들이 보여주었던 각성된 의식 즉 '정신적 순수'에 힘입어 또다시 정치적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한 그의 심정을 필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난한 길이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34) 활자화된 견해로는 「大學?可以做什麼」, 『嶺南文化時報』 제26기(1994. 9. 28) 참조.

35) 대표적인 예로는 북경에서 간행되는 월간지 『讀書』에서 올해 3월부터 '人文精神尋思錄'을 연속기획물로 신고 있다.

36) Liu Binyan, "Tiananmen and the Future of China",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4, 246면. 중국에 음란소설이 유행하는 것을 쾌락주의의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큰 도시는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도시 길바닥에서 조차 조잡하게 인쇄된 음란도서를 판매하는 노점을 외국인인 필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옥언, 「중국대륙에 부는 음란출판물 바람」, 『밀』 1993년 8월호 참조. 음란소설이란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화제에 많이 오른 것은 雷平의 『財閥의 뒷모습』이다.

다.³⁷⁾

이러한 체제를 가장 열심히 선전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인데 그들은 이것이 바로 '아시아적 민주주의'로서 서구·아시아의 정치전통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며 그 현실적인 모델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라고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자유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민생을 보증하는 '좋은 정부'를 뜻한다. 아시아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적이고 정직한' 정부가 필요한데, 민주주의 반드시 좋은 정부를 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 필자는 민주화와 사회적·경제적 침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중국이 문제삼는 것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인플레·부폐·부정의 해소 이고 민주주의라는 이유 자체는 오히려 농민의 민생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장은 '탄력적 권위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설명률이다.

그들은 경제발전에 고무되어 문화적 자긍심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문명의 자랑과 경제적 성장의 원천을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제도에서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그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권 즉 동아시아가 일단 그 주축이 된다. 이런 문학적 측면은 바로 뒤에서 따로 검토될 터이니 잠시 젖혀둔다면, 과연 '탄력적 권위주의'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동아시아인들의 '대안적인 정치적 인식과 이데올로기'로서 존속하고, 더 나아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아시아지역이 세계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면, 아마도 '탄력적 권위주의'가 그 일부가 될 아시아적 담론이 해제모니저 담론으로 위세를 갖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계질서 안에서 그나름의 '근대화위제'를 선풍시킨 아시아가 정상에 오를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³⁸⁾ 또한 아시아지역 내에서 같은 권

39) Francis Fukuyama, "Asia's Soft-authoritarian Alternative", *New Perspective Quarterly* (Spring 1992), 60면.

40) 정장연, 「NIES 현상'과 한국자본주의」, 『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 딜릭은 "진지구적 자본주의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적인 正體性을 강조하려는 시도들은 개인 규칙에 새겨져 있는 구미의 해제모니터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고 본다.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인이라는 개념」, 『창작과비평』 1993년 봄호, 50쪽 211면.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상업주의의 폐단이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구상하는 정치적 개혁의 성격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그는 서구식 의회주의도, ·싱가포르식의 권위주의체제도 아닌,³⁹⁾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두 정치체제 말고 제3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상이야 가능하겠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사실상 아시아지역의 정권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정치체제는 바로 싱가포르식의 권위주의체제가 아닌가 싶다. 중국에서는 빌씨부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따르려는 분위기가 강하고, 이른바 개혁적 지식인 가운데서 '신권위주의론'이 대두된 바 있다. 바로 이것을 중국인, 더 나아가 아시아인의 근대사에 대한 체험의 특징인 (집단의 생존권 중시에서 나온) 경제발전 우선론과 직결된 또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특징이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탄력적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로 표기되고 있다.⁴⁰⁾ 이것으로 NIES의 경제성장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윤리의 독특함을 포착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요구하는 아시아인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서구,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된 '자유주의적이고 시장경제적인' 해제모니저 담론에 놀려 자신감을 표현할 언어나 심리를 갖지 못하던 아시아인들이 대안적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해진 후꾸야마는 '탄력적 권위주의'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억압보다는 설득에 의존하는 일종의 온정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정치적으로 유사권위주의인 체제이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 성공에 의해 정당화되고,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와 달리 철저히 근대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지만, 경제보다는 도덕에 더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동조할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라는 것이

37) Liu Binyan, 앞의 글, 246면.

38) Robert Scalapino의 모델에 기원을 두는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Denny Roy, "Singapore, China, and the 'Soft Authoritarian' Challenge", *Asian Survey* (March 1994) 참조

위주의라 해도 '탄력적 권위주의'와 '경직된 권위주의'의 구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다원주의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한 형편이다. 결국 '탄력적 권위주의'는 '경직된 권위주의'로 물리 앉든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로 나아갈 과도기적 성격이기 쉽다 하겠다.

이같은 성격은 이 글의 주제인 인권이란 시각에서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아시아의 독특한 인권철학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지배엘리트가 기존의 통치수단을 온존시키기 위한 완전한 정치적 책략이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⁴¹⁾ 이에 대해 재야가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신조를 달성하기 위한 수사(修辭)일 뿐 그들 역시 일단 정권을 잡으면 통치의 현실에 부딪쳐 그러한 수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맞공격도 가능하다.⁴²⁾ 물론 인권을 정착화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탄력적 권위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권 주장이나 정치적 민주화 요구조차 허용하지 않고 만일 허용하면 자칫 국가안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 일쑤이니 그 경제성장의 업적 자체도 취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 보장한다고 자부한 생존권 즉 집단적 인권 자체가 그리 견고한 것이 못된다.

실제로 90년대에 들어서 중국 농민들은 경제성장의 뒤안에서 희생당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지경까지 나올 정도이다. 제정이 부족한 지방 당국이 과중한 조세부담을 떠맡기는데다 계속 뛰는 공산품 가격에 비해 낮은 농산품 가격으로 인해 소득을 올리기 힘든 농민은 경작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들 중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전국을 떠도는 수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제2의 천안문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학생이 아니라 빈부 격차에 분노한 노동자와 동맹한 농민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⁴³⁾ 따라서 과연 경제성장을 위해서 권위주의체제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인권의 신장은 정말로 성장을 혼란시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바로

41) 익명을 요구하는 필리핀 관리의 인터뷰. Michael Vatikiotis and Robert Delfs, "Cultural Divid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7, 1993, 20면.

42) Bilahari Kausikan, 앞의 글, 36~37면.

43) Liu Binyan, 앞의 글, 243~44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집단의 생존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인권 개념의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인권론에 깊이 영향 미치고 있는 동서문화간의 차이란 설명률에 대해 검토할 차례가 되었다. 이것은 방금 살펴본 '탄력적 권리주의'가 대안적 정치인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전망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간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핵심은 서양의 전통은 개인을 중시하나 중국과 같은 동양은 집단을 소중히 여긴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대립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중국처럼 유교적 전통문화에 뿌리둔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데 익숙하므로 개인적 권리보다는 민족(국가)공동체의 생존권이 우선시되고, 자유보존을 앞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듯 인권관에는 동서간 문화전통 차이가 염존한다.⁴⁴⁾

이러한 동시문화의 양분⁴⁵⁾은 아주 낮은 밸런스인데, 낮은은 만큼 상부자이고 거친 이야기다. 서구의 한 인권운동가가 저절히 지적하듯이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에도 공동체적 흐름이 분명히 있을⁴⁶⁾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사상에도 개인주의로 포착될 수 있는 요소가 없을 리 없다.⁴⁷⁾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과 서라는 구별이 해당초 자본적인 자리 개념이라기보다는 문명론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서 근대 아래 서구로부터 강요된 '근대'를 수용·극복하려는 역사적 상황의 필요에 따라 아시아인들이 고안해낸 지역개념이라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누가 어떻게 인권관과 관련된 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가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금 거론한 서방의 인권운동가는 아시아인이 조화를 추구한다지만 그것은 그 시각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세도적 징기를 민들이 있음을 배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개는 정부가 오히려 자연스런 '조화를 방해'하고 '의지를 강요'한 것에 불평하고 주장한다.⁴⁹⁾ 따라서 인권에 관한 문화

44) 楊廣, 「人權觀和中西文化傳統差異」,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3.

45) Aryeh Neier, 앞의 글, 43쪽.

46) 징기니 신종불교의 사상에서 개인주의 요소를 찾는 연구들이 있다. 물론 이것이 서구적인 의미의 개인주의 그대로는 아니다. 이때 후, 『중국 현대사상사』(上), 『아시아 역사』(1992), 57쪽.

47) 아리에 네이어, 앞의 글 43쪽.

라 활용되는 쌍방통행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권관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레퍼토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그중 어떤 요소를 미화(내지 특권화)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극복한다고 주장하고픈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⁵⁰⁾ 아시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를 결합시키려는 진지한 자세이다.

예를 들어, 개인과 (민족)국가는 양분법적인 설명률에 가려져온 '적능집단의 자율적 결집'의 전통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적어도 청조 말기 이래 대두되어 1920년대 전반기까지 활력을 더해갔던 그같은 흐름이 30년대 이래 굴절되었지만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이분법적 설명률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항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자율적 결집의 흐름 가운데 학생·여성·상인·농민·노동자 등의 집단으로서의 권리라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아닌 다른바 '집체인권'의 틀 속에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으며, 진진에 따라서는 그 틀 자체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된다.⁵¹⁾

이와 더불어, 30년대 초 중국현대사에서 제기되었던 '인권논쟁'의 전통도 비록 현실 속에서 억압된 역사적 가능성 있지만 이를 다시 포착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국민당의 일당독재(訓政)를 비판하면서 서구로부터 수용한 개인의 정치적 권리 즉 '인권'을 보편적 차원에서 옹호한 호적(胡適)⁵²⁾ 등의 노력은 '중국 특색적 인권'을 주창하는 오늘날의 중국인에 의해 "중국 혁명투쟁의 비법(非法) 상태에서" 제도화되지 못한 중요한 유산으로서 상기되고 있다.⁵³⁾

53) 대표적인 예로 가족윤리를 유난히 강조하는 李光耀를 들 수 있다. 그는 문화를 '운명'처럼 대하는 것 같다. Fareed Zakaria,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March-April 1994) 참조.

54)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졸고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민간사회의 케제』, 『아시아문화』(한림대) 제10집(근간) 참조.

55) 閔斗基, 『中共에서의 胡適思想 비판운동(1954~55)』, 『現代中國과 中國現代史』, 지식산업사 1981 참조.

56) 沈其之, 『中國現代化與人權』, 『社會科學戰線』, 1993-2.

직 차이라는 것도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정권이 조장하는 것이므로 인권운동단체와 정부 간의 쟁점이 아니라 정부와 그 국민 간의 쟁점이라 하겠다.⁵⁴⁾

여기서 필자가 여러 문명간에 존재하는 차이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자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차별화하는 태도를 문제삼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민 요근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세무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지닌 한계의 일면은 인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극을 축으로 한 냉전질서가 붕괴된 이후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 문명권을 축으로 한 세계질서를 전망하는 그의 발상이 일견 다원적인 중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교문명권과 이슬람문명권의 결합을 서구문명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봄으로써 유교문명권의 잠재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냉전시대의 유산인 '힘의 갈등이란 패러다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란 한계는 이미 충분히 비판된 바 있다.⁵⁵⁾ 이 글에 직접 관련된 문제점만을 잠깐 언급한다면, 문명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국가의 지배엘리트이자 그곳의 전체인권과 다수 지식분자가 아닌데도 양자를 혼동해 문명의 충돌을 말하고 있다는 중국인의 비판은 키답아들을 만하다.⁵⁶⁾ 더욱이 헌팅턴은 문명을 주어진 전통적 가치에 엄격히 묶어진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문명이 독자적 전통의 산물(및 포로)이라면 초문화적 판단이나 행동의 기반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만다.⁵⁷⁾

진통문화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진통문화 속에 담겨진 생생한 원초적 자료는 (국지적·진지구적 환경에 둘리싸인) 현실적 요구에 따

48) Aryeh Neier, 앞의 글, 43쪽.

49) Pierre Sane, "Human Rights and the Clash of Culture", New Perspective Quarterly (Spring 1992).

50)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및 이에 대한 5부의 논평문이 실린 집의 징기의 Vol. 72, No. 4 (September October 1993) 참조.

51) 劉軍寧, 『特別價值與普世價值之間 - 文明衝突的另一面』, 『二十一世紀』, 1994년 2월호, 130쪽.

52) Richard E. Rubenstein and Jacki Crocker, "Challenging Huntington", Foreign Policy (Fall 1994), 120쪽.

4. 맷음말

인권의 개념, 규정을 비롯한 인권에 관한 논의가 때때로 정치화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설명률을 빌리든 근대사에 대한 체험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의 차이를 포함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어디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주체도 개인·집단·국가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확장된 인권 개념은 자본·노동·지식정보의 교류에 의한 지구화 현상에 힘입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인권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들린다. 인권 준수가 고르지 못한 상황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이 체제 안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특권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국가든 저마다 능력을 발휘해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상승하여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천명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문명의 '신화'일 따름이라고 한다.⁵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만 해도 근대사에 편입된 당초부터 상당수 엘리트들은 뷔강한 국민국가를 모델로 삼아 이를 향한 경주에 전력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와의 전쟁(또는 그 '국내대리인')이나 그 연장인 (동서)진영간의 대립이란 위기상황은 국가가 주도한 자원동원을 계 효율적이게 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기인 지금은 예전처럼 인권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이씨면 국가경쟁력이 자원동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어느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가 '역사적 자본주의' 안의 경쟁에서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앞서간다 해도 그 '발전'은 국내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이기 쉽다.

이와같이 국가를 축으로 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포괄

57) 이에뉴얼 윌리스틴,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칭자과비평사 1993, 139~142쪽.

적인 인권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 따라 보편과 특수의 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그에 (아주 느리게 변화하며 구성원들 대부분의 초기 이의 일부가 되어온 바로 그) 문화의 차이가 양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손쉽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의 앞에서 이뤄진 분석은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어느정도 돋쳤지만,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보편과 특수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편과 특수라는 낡은 발상이 문학(또는 문학)에 근거하고 있는만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가 척첨한 문학단위라고 여겨진다. <동아시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세계체계적인 시각과 국지적 시각 간의 평행한 긴장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필자는 '동아시아적 전망'으로 이름붙여보고 싶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아시아의 상호연관성이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럽이 그렇듯이, 세계체계의 일부인 동아시아도 다양한 국가와 사회로 구성된 동아시아지역체계로 파악하는 발상이 필요하다.⁵⁸⁾ 지금 필자로선 더 이상의 체계화는 빅천 일로, 위의 본문은 어설프나마 그런 발상에서 써어진 것이라 하겠다.

같은 문학권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현실적 여건에서 어떻게 인권을 해석하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분단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인권논의는 서양의 '보편'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보이고 그것을 베제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방금 위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인권을 보편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되 기기에 어떤 특수성이 덧붙여져 보편성을 더욱 통성하게 하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상황에 동아시아적 전망을 적용하자면, 남한의 인권관과 북한의 인권관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통된 인권관에 비춰

58) 우리 사회에서 (불법) 취임한 연변동포와 동남아인 및 주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노동자의 인권문제,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해악이의 중국 진출 시도 같은 공해산업 수출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파괴는 '동아시아적 전망'을 갖고 대처해야 할 영역이다. '동아시아적 전망'은

이같은 실천을 이끌겠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될 것이

다.

어떤 특성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더 잘 살리고 있는지, 또는 걸여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남한 특색의 인권이나 북한 특색의 인권이 아니라 남한 특색의 인권이나 북한 특색의 인권이어야 한다. 사실 어떤 통일이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려면 한반도 주민 전체의 (물론 남은 의미의) 인권 신장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그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내용은 소극적이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별나게 정치화하려는 세력은 물론이거나 외 진보진영 역시 편협한 인권관을 지닌 게 아닌가 싶다.⁵⁹⁾ 남한의 인권운동이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 사라도 분단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면서 남·북한 인권을 '보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통찰에 귀기울여봄직하다.'⁶⁰⁾ 여기서 이에 대해 질게 거론할 여유는 없겠고 다만 북한(당국) 간의 인권논쟁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설명률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평기에 한반도의 인권문제에 대한 암시를 담고자 했다. 다만 중국은 국제무대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인권논쟁이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르다 하겠다. '북한당국을 '악마'로 보고 빌리 무너뜨리는 걸만을 추구한다면 모를까, 혁신의 현실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 면 냉큼 진전을 본 북미협상은 (넓게 규정된) 인권문제의 거론을 위해서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인간 개개인에 가장 절실히 인권의 차례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기회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 나이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59)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는 기왕의 시각은 '자유'으로 보는 것이 한 주단이라면 다른 주단은 항일과 자주의 민족정통성을 지닌 철체적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니면 아예 실제에 접근할 자료가 없다거나 대체문제란 이유로 소극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다. 비교적 온건한 시각은 '비범이' 아닌 '햇빛'을 통한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남한이 평화와 군수의 방향으로 나아가 북한의 북지와 경제발전을 도우며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경제협력을 해주면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유지에 도움밖에 안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60)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39면.

■ 출자료 : 선언문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 선언

방콕, 1993. 3. 27.

개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적 개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110개의 비정부조직에서 파견된 약 240명의 참가자는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동자,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대변하면서 199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정부간 모임(1993.3.29~4.2, 방콕)과 세계인권대회(1993.6. 비엔나) 및 그 이후의 활동을 앞두고 국제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축발되었다.

문제제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고려사항을 뽑아내었다.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들 문화의 인간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 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지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망명자와 피난민, 불구자,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는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2. 불가분성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는 인권의 내용이 시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지 상관없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관계를 맺는다. 인권의 향유는 공동체에 대한 다소간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러한 침해에는 자결권의 박탈, 군사적 점령, 살해, 고문, 정치적 억압, 표현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억압이 포함된다. 한편 빈곤과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종종 인권을 회생시키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권리침해는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정치체계의 산물로 자주 일어난다.

경제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잘 이루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청된다. 한 종류의 인권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해 거래될 수는 없다.

3.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쟁점은 인권논의 중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제도와 관행에서, 계급, 카스트, 민족성을 통하여 관철되는 가부장제도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부장제도는 일종의 노예제이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족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존엄과 자결권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불가분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권리—예컨대, 농토, 집과 다른 자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유엔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간, 성적 학대, 여성매매, 가정내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만연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는 종교적이고 민족적 주체성을 군사적으로 점점 더 주장하는 것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종종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평계로 이용하였다. 위기상황, 예컨대 인종폭력, 지역폭동, 무장충돌, 군사점령, 추방 등의 경우에 여성의 권리는 특히 침해된다.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의한 경우, 많은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보조건을 둔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기원에 따른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연대는 국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일극적 질서를 넘어선다.

5. 지속 가능한 개발

어떠한 나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즉 외국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없다. 잘못된 개발(maldevelopment)이나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의 주요한 원인은 아태지역에서 제구주의가 지배한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의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서 국가적 해방과 민족의 자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잡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개발의 극대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평등과 사회정의, 수입의 분배와 공정한 자원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시골사람들, 도시의 빈민들, 소수자, 토착민, 망명자, 피난민, 노동자 그리고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모델은 잘못된 개발을 초래하였다. 민족해방을 저지하려는 활동과 정치적 군사적 억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결권이 개발의 구현과 관련한 주요한 양극점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적 특이성과 결합하여 있지만 사실상 국

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간의 공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경은 때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국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모형을 제건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남녀 모두의 요구이며, 부채삭감, 국제적인 재정적·경제적·상업적 체제 개혁, 의사결정과정의 더 많은 민주화를 포함한다. 다년적이든 양면적이든 국제원조기구와 재정기구의 역할은 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유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강국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계적 평등과 부존자원의 면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 시장의 권리(market rights)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러 1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차취할 자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요망된다. 잘못된 개발은 가난과 수입불균등, 약탈, 수탈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땅과 자원의 점령, 환경파괴가 그 귀결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개발, 자유, 존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시경제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 귀결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여성의 권리부여 및 성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과정을 민주화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개발과 인간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다.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형식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일정당이나 복수정당 선거에서 의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수준의 사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 모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과 신뢰성 있는 절차와 제도 아래 모든 수준에서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홀통한 통치, 타락의 추방, 국민에 대한 국가와 다른 당국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즉 소수자와 권한이 박탈당한 집단의 참여와 보호를 포함한다. 그것은 시골사람들과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위한 토지 및 사회정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작업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펴져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조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7. 군사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사화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화는 시민사회와의 파괴로 귀결되며, 자결권을 침식하며, 사람의 자립할 권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때로 군사화는 자경단과 같이 민간인 집단의 의관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원주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주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성적 학대, 강간 그리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특히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체포와 고문, 철수령령, 집단 살해, 실종,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쓰라린 사건들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사화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인종말살을 포함한 인종적 불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작고 다소 덜 군사적인 국가의 군사화는 초강대국이나 종교적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다. 대량살해무기의 판매를 통하여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잘못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탈군사화의 요청과 결합해 있다.

8.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적 갈등의 깊은 기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권리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따라서 자결권에 대한 민족의 권리는 모든 정부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적 결정이 반드시 국가상속이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결정은 독립, 자유로운 연합, 드립한 국가와의 결합 그리고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도달된 그의 합헌적 조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

9. 고문

아태지역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의 존재는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얻으려는 법집행요원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값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 몇몇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예방의 차원에서 그리고 치유의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유라고 함은 고문희생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도 담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이 자유는 많은 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독립한 언론매체가 없다. 사람들은 공포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수감되며, 살해된다.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평계거리는 종종 국가안전, 법과 질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의 외피이며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기 위한 외피이다.

11. 인권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훈련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내용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맹도 여전히 광범위하다.

학교의 교과목은 지배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훈련은 예방적 및 치유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계회 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12. 원주민

아태지역은 많은 원주민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원주민에게 기본적인 쟁점은 많은 것이 정부에 의해 토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은 적절한 국제인권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 특유의 문화적 주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부—남이나 북으로부터 혹은 동시에 혹은 국제적 금융기구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자행된 민족살해, 인종살해의 희생자이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제도는 집단적

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여타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에는 토지의 몰수 및 압탈, 무장충돌, 피난민으로 추방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박해 및 억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때로는 관광업이 상업적인 차취를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기도 한다.

13. 어린이

어린이의 학대와 차취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는 어린이 노동, 노예 및 성적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의 판매 및 거래행위, 무력충돌 상황의 어린이, 수감된 어린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 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어린이, 가족분열이나 해체와 더불어 가내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영양공급, 교육, 보호장소, 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조차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AIDS의 출현은 어린이를 더욱 궁지로 밀어 넣었다.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초기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체계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가난, 영양부족, 질병, 교육의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로부터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큰 흐름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군사화, 왜곡된 개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비록 많은 나라가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 집행은 여전히 미미하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려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일에 밀린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이 생존, 보호, 개발 그리고 참여에 대한 어린이 권리의 집행이,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4. 노동자

아태지역의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만한 인권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상당수이다. 연대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인권이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성, 이주민, 노예노동자,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비조직된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은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특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은 이 지역에서 자주 무시된다. IMF·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조직이나 기구는 때로 경제적 자유라는 명분아래 이러한 권리를 잠식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침해 중 상당수의 것은 남쪽에 대해 인권을 외쳐대는 바로 그 북쪽 국가여 의해 자행된 것이다.

15. 망명자와 피난민

망명자와 피난민문제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 무장충돌, 민족불화, 그리고 기타 요인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도 또한 생활근거지를 찾아 그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들의 처지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국제적 기구의 부족과 관계있다.

망명자와 피난민의 안전은 제한적인 정부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종종 위기를 맞는다.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망명자의 기본적 권리은 자주 침해 되고 있다. 망명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립된 절차는 자주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래의 자발적인 복귀도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인권은 자주 제한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억압된다.

적절한 망명기구에 대해 동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승인하고 상황을 국제적으로 선명히 하는 데 대한 의면을 뜻하는 것이다.

16. 퇴보

몇몇 나라는 인권퇴보를 통하여 인권의 항유를 제약하려고 한다. 때로는 민간정부의 외관을 갖기도 하지만, 군사화, 군사점령 및 통치가 확장되면, 인권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공간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안전, 법, 질서 등을 이유로 인권기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충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17. 인권활동가/옹호자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옹호자—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와 이 지역내 사회운동에 대해 점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은 자주 협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비정부조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은 민중의 이익을 외치고 그 진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권리와 인권의 모든 것을 함유할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8.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행정이 권위적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인권기준과 대립되는 다양한 국내법과 결합해 있으며, 특히 차별정책,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부 판사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있다.

법률체계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재판체계에 접근하는 문제에 주요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구조, 지원, 법적 지식의 유

포와도 서로 얹혀 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이 재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요청한다.

쟁점(Issues)

참석자들은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 * 점증하는 정부당국의 불법;
-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해손하는 정부의 활동;
- * 남·녀의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
- * 가결권에 대한 위협;
- * 경제권을 포함하여 남자위주의 정치로 인한 여성 인권에 대한 무시와 끊임없는 침해 및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부당성;
- *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압박, 범죄, 소비주의, 군사화로 인한 어린이 인권의 침해;
- * 점증하는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 *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무장충돌의 확산;
- * 살인·살종·고문에 의한 정치적 억압, 정치범 그리고 자결권·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억압;
- * 건강권의 침해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건강 보호체계;
- *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부정;
-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
- * 이민 노동자들의 비보호;
- * 농촌사회에 대한 위협;
- * 인도주의적 기능을 실천하는 건강이나 교회에 관련

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

- * 광범위한 성적 착취;
- * 극단주의와 혼재된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의 다른 형태;
- *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및 기타 구제의 결여;
- * 인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면책;
- *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많은 강요;
- *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돋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 원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적 압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적당한 보호;
- * 최하층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 * 증가하는 수많은 망명자 및 피난민과 그들에 대한 위협, 특히 피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결여로 인한 위협,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
- * 육체적·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 * 노인의 복지와 지원의 결여;
- * AIDS의 증가와 상대적 차별;
- * 마약의 확산 및 그것과 관련된 이용;
- * 낮은 교육수준, 특히 기본인권정보의 비효율성, 자각과 기술의 결여;
-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동의를 너무나 많이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결여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개인 및 NGO의 접근이 제한된 점;
- * 독자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부간 차원의 기구의 결여;

아-태평양지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i)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보호 증진할 것:
 - NGO선언에 제의된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수자, 원주민, 비조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을 하는 것.
 -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 ii)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 iii) 개발전략은 지속적이고 동등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개발전략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 iv)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제한하는 관행과 극단주의에 반대할 것. 특히 여성의 독립된 존재를 부인하는 법률, 정책, 종교·문화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운동, 대중교육, 장기간의 개발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
- v) 유엔세계인권대회전에 억압적 법률을 개혁하고, 임의적인 체포를 없애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정부수준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체계를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법률, 명령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
- vi) 무장충돌의 근본원인인 외국의 지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토지의 박탈과 권리의 박탈 그리고 지배층의 외세와의 결탁을 제거할 것;
- vii)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용을 개발과 인권의 증진·보호·예방, 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협의과정과 사회적 서비스 평화

- 적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어린이, 소수 원주민, 조직·비조직 노동자, 피난민, 망명자, 농민, 기타 소외계층을 고려할 것;
- vii) NGO를 포함한 인권활동가 내지 운동가의 활동과, 합법적 사회운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 나쁜 관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매개작용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
- ix) 민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도움과 지원의 효용을 포함한 법적 수단 및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 그리고 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자의 형사면책에 반대할 것;
- x)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예산을 인권개선과 보호로 돌림으로써, 또한 다른 재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이 국가예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할 것;
- xi) 정보제공을 늘리고 자자파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할 것. 참여 학습방법이 그 지역의 문화적 부를 이용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기준의 증진과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특별권고

1.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i)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다음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2 차 선택의정서;
 - 고문금지 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CEDAW);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들;
 - 소수자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 ii) 유보조항,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조항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조항에 유보조항을 철폐하고 그에 따른 유보조항의 완전성을 재검토하는 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
- iii) 고문금지조약에 관하여 제정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조안(The Draft Declaratio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준할 것.
- iv)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내법률을 만들고 그 실행을 것.
-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성등과 차별철폐 조항을 승낙할 것. 그리고 단체와 사람들의 존엄성과 국가의 법률 사이의 도순들을 인권의 보존성,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자,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는 것;
 - 종교적 조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
- v) 조직적인 성폭력과, 고문, 강제적인 비자·탈출인 실종, 초법적인 강제처형과 일의적 그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
- vi) 인권침해의 희생자, 특히 그들 희생자와 조스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 vii) 정치범, 고문 희생자, 망명자, 피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것;
- viii) 국가에 의해 시인 내지 지원된 조직적인 철학, 즉 고문, 성적노예(devadasi, 신도 노예, 체제의 희생자를 포함), 강제노동, 비자발적인 실종, 일드로 장

제집행, 경찰과 군의 압박, 정치적 억압, 부당한 구금과 국내적 이주민의 희생자의 가족과 그 생존자에게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완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 ix)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유엔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정부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은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인권조항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 보고서의 초안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군대, 국가 안전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 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정부는 지역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홍보하여야 한다.
- x) 공개적인 합의에 따라, 특히 정부관리와 고용인, 법집행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특별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성적·평등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 모든 교육 기관의 과목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권프

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가 인권교육과 훈련을 잘 실행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 xii) 인권조약과 기구에 관련된 자료를 아시아-태평양의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할 것.

유엔에 의한 조치

국제기구

- i) 우리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인권제도를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의 사안들이 유엔의 조약기구, 사안별 국가별 보호자 및 실무위원회, 독립전문조사단 그리고 자신의 직무내에서 인권보호를 위임받은 모든 기구들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 ii)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환영하며, 이 초안이 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일종으로 승인하며 성차별의 최악의 형태로서 공과사를 불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앨 보다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두어 태아의 성별 결정에 생물학적 조정을 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한 “성차별반대협약”的 초안을 도입함에 있어 여성 인신매매 반대연합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iii)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시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사무총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를 각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iv) 우리는 비상사태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악화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에 관한 유엔 보고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v) 우리는 유엔세계인권회의가 현재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개발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vi) 우리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정의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 강간의 범위, 강제이주와 전쟁범죄의 하나인 정주지파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회통, 근친상간, 인신매매 및 매춘을 포함한 성적착취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vii) 우리는 유엔이 반인륜적인 범죄인 불가촉 천민에 대한 관습과 카스트제도, 종교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차별을 2000년안에 근절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viii) 우리는 유엔이 원주민의 탈식민화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실효성

우리는 유엔 기능의 괄목할 성장을 요망하며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아래와 같은 새로운 대응기구 및 조처의 수립을 요청한다.

i) 자결문제를 다룬 유엔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사무부총장의 관할하에 있게 될 것이다.

ii)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iii) 유엔기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보장과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내에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방법의 대강을 정할 실

무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iv) 아래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약감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국가의 의무수행 및 미수행 정도에 관한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
- 국가보고서의 제출, 특히 기일내 제출을 요구할 것
- 국가와 비정부단체간의 협의 및 (비정부조직의 동의하에) 국가보고서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장려할 것
- 공식적으로 비정부조직에게 정부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것
- 각 회의과정을 완전히 공개할 것

v) 현행 국가별·사안별 보고자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며 이들 기구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 실행권고안에 대한 각 정부의 이해여부를 추조 조사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 유엔 대표단, 보고자, 실무위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vi)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정치가나 외교관 같은) 정부직에서 선발하지 못하여 학계, 비정부조직, 언론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從 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그 보자는 출신국이 아닌 타국가로부터도 지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

vii)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판무관을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조화, 조정을 할 새로운 고위 정치기관으로 설치한다.

viii) 상설적 지위와 감시기능을 갖는 유엔원주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원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ix)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의제의 상설항목으로 포함시켜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또한

1503절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서도 제기한다.

x) 상황이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유엔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를 통하여,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상황에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행동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기구를 개선한다.

xi)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 상설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xii)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 법원은 개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 전쟁범죄, 반평화죄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시의 성과 관련한 학대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배상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xiii) 강제적 매춘을 포함한 군대의 잔혹행위를 심판할 전쟁범죄법정을 아시아 지역내에 설치한다.

xiv) 원주민의 권리, 성차별 및 성폭력,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신매매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를 설치한다. 이 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단체 및 정부간 기구로 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보고자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또한 보고를 해야한다.

xv)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xvi) 유엔직원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훈련을 한다.

xvii) 성평등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인권에 관한 유엔의 모든 권고적 활동속에 통합한다.

xviii) 유엔예산의 최소 5%를 인권활동에 할당한다.

xix) 개회기간의 연장 및 지원단의 추가적 제공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고문희생자를 위한 유엔 자발기금과 같은 유엔인권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시킨다.

xx) 유엔의 감시 및 조사보고활동, 이의제기절차와

그에 따른 권고활동, 여성·아동·원주민에 대한 권리침해제출과 관련한 훈련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인권교육과 훈련

우리는 유엔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중드 10년”을 실현하라.

ii) 인권교육과 훈련을 점진할 기초-중간-한국권 조약의 감시기구에 의한 훈련을 제공한다.

iii) 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각국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활동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한다.

iv) 각 유엔기구들로 하여금 1995년 국제여성선언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여성권에 풀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v) 원주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우선인 권리로 공식의제가 되도록 하라.

민주화

우리는 유엔의 중요절차가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해 민주화될 것을 권고한다.

i) 안전보장이사회와 민주화, 특히 기본권 및 성평등 이사국 자격의 폐지 및 총회로 추가로 권한이 있는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에 의한 강제적 폐쇄로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그들이 그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한정되는 그 국가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단된다.

ii) 여성, 아동, 원주민, 노동자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집단들의 관심사와 체험 그리고 토종들이 그들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의 본래 진행중인 활동과 어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존속과 지역회의 및 세계인권대회의 의제로 포함하고 그 의제에서의 발언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 정부상호간의 인권문제를 다룰 구조적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시아 및 그밖의 지역 모두에서 비정부단체가 유엔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매년 8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임결정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경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iv) 유엔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인적·재정적 지원을 이용하게 하여 인권에 관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 조장, 지원한다.

특별기구

유엔제도 및 그 특별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과 남과 북의 각국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 규제 및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 i)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의한 기구들의 정책이 유엔/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라.
- ii)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비공식노동운동단체들을 보호하라. 그 방안으로 비조직화된 부문/비공식부문의 노동자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사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한 동기구의 정책사항을 강화하며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 점령지구내 노동자의 축출 또는 강제이주관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한다.
- iii)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행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노동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라.
- iv) 성과 관련한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유엔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보장하라.

군사화

우리는 각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i)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생산, 판매, 전시 및 광고와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 ii) 현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아태방어 명목의 군사훈련 및 자국민과의 전투를 위한 서방 군사교문관 및 안전요원의 채용을 중지하라.
- iii) 군사예산을 개발수요, 보다 나은 인권침해방지기구, 인권보호를 위한 자문절차, 사회적 급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재배분하라.
- iv) 모든 준군사력을 해산하라.
- v) 아·태 지역은 외국의 군기지를 유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혼란설을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 vi) 군사네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 vii)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 긴급대응조치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혈충돌 또는 민족간 충돌의 상황에서 성원전체가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보장할 것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 및 남성군사요원의 군사훈련 및 거동이 현지 여성에 대해 끼치는 효과를 보고 제출할 것
- viii)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위반한 채 구금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석방하라.
- ix) 모든 시민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라.■

고대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현대적인 국가제도의 등장, 새로운 세계의 발전, 그리고 뒤 이은 산업화와 유럽문화의 전 세계에로의 확산 이후 경제 및 기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와 관련된 독특한 관습과 협약이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관습과 협약들은 「외국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국제법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창시자들, 특히 프란시스코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86? ~1546), 유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에미리치 바텔(Emmerich de Vattel, 1714~1767)은 일찍이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들 까지 포함하여 어떤 자연법적인 권리を持つ 있다고 생각함으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공정한 치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쟁을 종결하면서 독일에 있어 로마카톨릭 신교도 간의 동한 권리의 원칙을 확립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같은 소수의 기독교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이따금 이용한 것 이외에 다른 국가 국민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었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전 까지의 약 150년 동안 서로 인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국제적인 수단에 의해 차국인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시도가 행해짐으로써 오늘날 「인권에 관한 국제법」으로 불러지는 것이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는 이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이유에서 「외국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주의적인 간섭〉

전통적인 국제법 밑에서는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처리하는데 있어 베타적인 재량권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국가가 자국민, 특히 종교 또는 인종적인 소수 국민을 처우할 때는 너무나 강제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인류의 양식에 충격을 가한 결과 익압받는 소수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위험을 기하거나 군대까지 사용할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간섭"의 대표적인 예는 1827년 당시 터키의 지배 밑에 있던 그리스계 주민들의 고통을 중지시킨다는 명목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함께 오토만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행동에 합의한 것이었다. 그 결과 1830년에는 그리스가 독립하게 됐다.

이와 유사한 간섭은 1860년 시리아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량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1866년에서 1868년까지는 크레테의 주민에 대한 박해를 구제하기 위해, 또한 19세기 말 터키 지배하의 여러 발칸 국가에 있어 기독교에 대한 터키 당국의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러 유럽 강대국들이 취한 행동이었다. 기타 인도주의적인 간섭에 속하는 것은 1890년대와 1900년대의 루마니아 거주 유대인들을 위해 여러 서방국가들이 항의한 사실이 있고, 최근의 예로서는 소련의 유대인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의한 것이었다.

인도주의적인 간섭에 있어서는 간섭의 정당성 여부와 간섭방법을 어떤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도주의적인 간섭 개념을 뒷받침하는 원칙은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법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유엔헌장이 효력을 발휘하여 국제적인 사건에 있어 일방적인 군대의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는 인도주의적인 간섭의 이용은 옛날 보다 더 어렵게 됐다.

〈국제적인 조약〉

종교적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조약을 사용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을 종결하고, 독일에 있어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도 모두에 대해 동등한 권리원칙을 허락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카톨릭 국가들도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의 관할하에 있는 로마 카톨릭교도의 권리를 위해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774년 터키는 러시아 지역의 이슬람 교도를 보호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후 1815년의 비엔나 회의는 독일에 있어 기독교 각 분파간의 평등과 함께 스위스의 여러 지역(Canton)에 있어 종교의 자유와 각 종교의 평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 회의는 유대인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첫번째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합의했다. 1878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터키로부터 독립할 때 터키와 함께 모든 주민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제일차 세계대전의 일부 평화조약, 이른바 소수민족에 관련된 특별조약, 그리고 각종의 선언문은 중부 및 동부유럽의 여러 국가, 그리고 중동의 이은 인종, 언어, 종교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일련의 의무조항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함으로서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률 앞에 평등하고 똑같은 정치적 권리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했으며, 소수에 속하는 국민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기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와 시설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조약들에 의해 확립된 소수민족의 보호제도는 일반적이 되지 못했다. 독일은 패전국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례지아 지방의 주민에 대해 15년 동안 갖게 되는 의무 이외에는 (나중 1922년에 일부 지역을 독일로 편입) 소수민족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았다. 소수민족과 관련된 모든 조약들은 국내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의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연맹의 보장을 받는 조약이 되었다.

19세기 전반을 통해, 또한 1814년의 파리조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노예무역 금지는 국제적인 노력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약체결은 1815년과 1822년, 또 다시 1862년과 1885년, 그리고 1890년에 행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무역 금지 운동은 노예무역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26년의 국제연맹 회의는 모든 가맹국이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지는 한편 점진적으로 또한 가능한 가까운 장래에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는 「노예제도에 대한 국제취약」을 통과시키고 비준하도록 요청했다. 그후 각각의 형태의 노예제

도에 대한 투쟁은 유엔의 주도하에 계속되게 된다.

〈사회 및 노동문제〉

19세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많은 인도주의자, 사회개혁가,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국제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과 일부 국가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회의가 1890년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그 회의는 사실상 몇개의 모호한 전의안을 채택하는 것 이상 진전되지 못했지만 그것의 정신적 영향력은 커다. 1905년과 1906년 또 다시 개인과 단체들의 주도로 정부대표들이 스위스의 베른에서 회의를 갖고 처음으로 두개의 노동관계 협약을 체결했다. 한가지 협약은 여성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냥의 제조에 있어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백린 또는 황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협약의 실제적인 범위는 당연히 좁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원칙은 현대문명의 발전에 이정표가 되는 상징이면서 도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전쟁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전쟁수행 방법과 전쟁 회생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다자간 조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있다. 주로 두명의 스위스 시민에 의한 노력과 그들의 이상을 받아들인 하나의 스위스 단체, 나중에 지금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모체가 되는 단체에 힘입어 「전쟁부상자 상태의 개선을 위한 협약」이 1864년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그 조약은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고, 포로가 된 부상자는 더 이상 군대에 복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868년의 센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은 전쟁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문명의 발전된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약 당사국들은 당시 시점에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전

쟁의 불가피성과 인도주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러한 전쟁의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시작은 1874년의 브뤼셀 회의와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회의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듬어졌다. 그 이상의 법률적 발전은 1, 2차 세계대전의 중간 시점인 1925년과 1929년에 계속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49년의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4번에 걸친 제네바 회담에서 검토되었다.

〈국제 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이 독일 및 그 연합국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국제연맹의 창설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리에 모였을 때 전승국의 하나인 일본은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종이나 국적을 근거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영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국제연맹 협약의 전문에 비슷한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프랑스, 이태리, 중국과 같은 중요한 국가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 또한 채택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국제연맹의 설립 조약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취급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됐고, 또한 차별 철폐에 대해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그 협약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권리와 복지의 인정을 시사하는 일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었다.

- 1)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 2)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공정한 처우의 보장 의무
- 3)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항의 집행에 있어 국제연맹의 전반적인 감독 허용
- 4) 전염병의 예방 및 감시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

또한 국제연맹에 의해 독일과 터키의 식민지를 위임 통치 하게된 전승국

44

의 의무는 원주민의 행복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신성한 문명의 위임"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조치는 약 반세기 후 유엔의 신탁통치 제도에 계승되어 서남아프리카(지금의 나미비아)영토에 대한 남아프리카 연방의 신탁통치에 반영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 종지부를 찍은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 및 기타의 평화 조약국들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제 13장을 모체로하여 국제노동기구(ILO)를 창설하게 되었다. ILO가 다른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점은 그 기구가 정부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고용자와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뛰어난 ILO의 구조와 목적은 지금도 1919년 설립될 때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ILO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의 안전과 복지, 노동시간 그리고 유급휴가 등과 같은 노동관계 법규 및 노동조건에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엔의 특별기구가 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제노동의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과 같은 인권보장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104

유엔(UN)과 인권문제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에 대한 노력이 중요했다고 해도 국제무대에 있어 진정으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전학행위가 있고 난 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전승국들은 독일의 중요한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국제군사법정」을 설치했고, 1945년에서 1946년에 걸친 뉴른베르그 재판에서 독일의 고위 관리들은 "평화에 대한 범죄"와 "전쟁 범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았다. 군사법정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의 명령,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는 "인류 또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군사

46

고, 또한 "국내관할" 조항은 인권이 과거에는 국제 사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국내관할 내부"의 국가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유엔의 현실적인 실천에서 볼 때 그렇게 대립되는 주장을 겪는 문제는 정부의 성명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인권문제에 있어 헌정의 성립 의사나 "국내관할" 조항, 아니면 현장의 일반성과 모호성은 사실상 유엔으로 하여금 개인의 청원, 중인들의 중언, 국가적인 이의제기,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비정부 차원의 단체로 부터의 보고를 근거로 구체적인 인권사항을 조사, 토의, 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또한 적어도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경우, 유엔 가맹국의 대다수가 필요한 행동을 취할 의향을 갖고 있을 때는 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77년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과 같음). 통상적으로 정부는 당연히 자신의 주권 또는 국내 관할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한 인권의 향상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의 기구들도 전반적으로 유엔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의 대부분, 특히 초국가적인 권한의 부재와 분열된 권리장치의 존재로 인한 무력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거나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의지가 있을 경우 유엔의 인권보호에 대한 법률적인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유엔 현장상 인권항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총회에 있고, 총회의 관할 밑에 있는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그 하부기구로서 인권분야에 있어 유엔 정책의 중심적인 기구로 활동하는 정부간 기구인 인권위원회에 있다. 인권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은 위원회 소속의 활동집단에 의해 주도되는데, 조사, 평가, 권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차별 금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 위원회가 제기하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주장을 조사, 진의할 수 있는 활동집단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 "심각한 침해" 주장은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1970년 1503호 결의사항에 의거 개인과 단체의 제보를 근거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활동집단의 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대표단이나 사절단을 임명하여, 보고서를 작

법정의 구성과 절차문제는 나중에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류에 대한 범죄"의 주장을 신중하게 적용했지만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처우도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든 것이었다.

〈유엔헌장〉

1945년의 유엔헌장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커다란 국가와 조그만 국가 간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유엔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원칙을 기초로 국민들 간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또한)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고무함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또한 두개의 중요한 조항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서약한다." 하지만 인권의 보호와 더불어 증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유엔을 설립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분명히 거부됐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게다가 유엔헌장은 어느 조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아니면 침약행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헌장은 가장 전형적인 설립문서 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인권조항에 있어 눈에 띄게 개략적이면서 모호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은 설립 역사 및 "국내관할" 조항과 뒤엉켜 적지 않은 법률 및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의 학자들은 국가는 유엔헌장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인권을 증진한다고 하는 모호한 의무 이상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유엔은 이렇게 됐든 가맹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호를 강요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한 의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가가 현장의 당사자가 될 때 행하는 "서약"은 결국 윤리적인 의미 이상을 갖는 것이라

국제사회와 인권 47

성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제공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검토하게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부의 험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 뒤에 인권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여성의 지위에 대한 위원회와 같은 기타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인권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국제적인 인권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개 펴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76년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같은 해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문서를 합쳐 국제적인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 유엔헌장의 인권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인권 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은 각 국가의 헌법 및 법률체계에서 열기된 중요한 정치적 인 권리와 시민적인 권리의 모두를 합친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 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법의 치밀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의 권리, 휴식과 휴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도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의무 보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를 위한 성과와 공동되는 기준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채택과 다음 두 가지 협약의 서명 및 비준완료 간의 18년이라는 지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 보다는 법률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것은 일부 국가의 법정에 의해 유엔헌장이 규정한 인권에 대한 의무라고 판결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105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선택조항〉

1966년 12월 19일부터 서명하여 1976년 3월 23일을 기해 효력을 발생한 이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이 표명한 권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신의 영토내에 소속되고 관할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 피부 색깔,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신분, 또는 기타의 위치에 구별하지 않고, 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망명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된 일부의 권리들은 이 약정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와 함께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가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국민의 차지에 대한 권리와 인종, 종교, 언어상의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이 협약이 중복되는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다가 이 협약은 가맹국들이 설출하는 18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개인적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게 하고, 가맹국가가, 협약이 규정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을 지게 했다.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을 명백하게 인정한 가맹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가맹국이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개입할 수가 있다. 만약 인권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 중재위원회에 회부시키기 사실을 조사, 보고케 하고,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진해를 보고케 할 수 있다. 선택조항에 가입한 국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라고 하는 개인의 주장을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인정하게 된다.

〈세계, 특히 유엔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유사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열거한 관련 권리의 대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협약 또한 관련 권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에 관련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 및 학문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과는 달리 이 협정은 일부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실현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아 가입 당사국은 "점진적으로 협정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의 가능한 역량"에 말기고 있다. 이 협약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의 약속"으로서 기준 보다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즉시 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 시행해야 하는 한가지 의무는 인종, 피부 색깔, 성, 언어, 종교 또는 정치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및 사회적 출신, 그리고 신분이나 기타 위치를 근거로 하여 앞에서 열거한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에 관련된 국제적인 감시조치는 가입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이 열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행사항을 유엔의 경제, 사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

유엔의 주도로 제안되어 채택된 인권관련 조약은 앞에서 언급한 두개의 협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짧게 언급하려고 만 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범한 범위에 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제목만 든다면 대법 학설이 금지의 차별, 전쟁시 고인 및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치우, 피난민에 대한 치우 규정,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와 포용, 노에세도와 강제노동이 금지 및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및 인종차별 명시의 예방 및 차별,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실현과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 폐지, 그리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기회평등과 치우 해消 놓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978년이 유엔 인권 보고서 참조). 이러한 조약의 대부분은 특히 II.O의 같은 유엔의 전문기구

작품으로서 감시와 집행절차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65년 12월 21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한 것과 같다.

〈유엔의 인권관계 선언〉

조약을 통해 인권의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세계인권선언"의 성과에 고무된 유엔은 인권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다. 총회의 결의 형태로 채택된 선언문은 실제 회원국에 대해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고 엄숙한 의미를 갖는 원칙을 선언할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에 대해 강력한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세계인권선언」이후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권사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1960년의 "식민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선언문"과 1970년의 "유엔헌장에 의거, 국가 간의 선린관계 및 협력에 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문"일 것이다.

인권과 헬싱키회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3년 7월 3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제네바에서 계속되다가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막을 내린 「유럽의 안전과 협력에 대한 회담」의 진행사항과 그 이후였다.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국, 그리고 13개의 비동맹 중립 유럽국가를 비롯한 35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그 회의는 지금까지 냉전의 계속으로 불가능했던 동서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서로간에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 특히 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시점에서 확립된 서부 국경선을 인정받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서방제국들은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토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주장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결과, 인권문제와 해외이주의 자유 그리고 동서간의 정보교환에서 일정한 양보를 얻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회담에서 채택된 "마지막 조항", 「국가간 관계의 지도원칙에 대한 선언문」의 초반부에서 참가국들은 다른 "지도원칙"들과 함께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들 간의 평등한 권리와 자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실천할 결의"를 임숙하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권리주의 정권의 자유화가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헬싱키의 마지막 조항」은 토의의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존중하고자 하는 결의"와 "실천한다"라는 용어는 오직 도덕적인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됐고, 「원칙의 선언」은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됐으며, 참가국들은 집행기구에 대해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권에 대한 위치를 포함하는 「원칙의 선언」은 언제든지 최소한 국제법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개다가 보통 "バスケット(Basket)"으로 불리지는 4개 부분의 마지막 조항은 참가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서 시작된 여러 국가의 협의를 계속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조항"의 인권조항이 채택된 후, 그것이 외부적인 감시의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척도가 됐고 눈에 띠는 위반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헬싱키 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유엔총회의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조약은 아니지만 적절한 인권보장에 대해 광범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인권 정책에 대한 감시를 쉽게 만들었다. 동서간의 부분적인 신뢰감을 생각할 때 헬싱키 회담은 적어도 인권분야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적인 발전

인권의 국제적인 향상과 보호를 위한 행동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인권현장의 테두리 내에서 강제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이른 것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뿐이었다. 아랍의 「상설인권위원회」는 1968년 9월 아랍국가 협의회에 의해 창설되었지만 창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의 권리문제에 정신을 빼앗긴 결과, 계획된 「아랍인권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인권의 보호보다는 추진하는 의미에서 기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

〈유럽의 인권체계〉

1950년 11월 4일 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53년 9월 3일을 기해 다섯가지 추가조항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 이 협약은 이 분야의 국제적인 실험으로서 가장 앞선 것이고 성공적이었다. 나중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비슷한 또 하나의 협정은 1961년의 「유럽의 사회 현장」으로서, 그것이 규정하는 사항은 회원국이 「유럽협의회」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정교한 감독체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유럽협정에 의해 창설된 기구는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유럽협정은 또한 유럽의회의 정부차원 기구인 「유럽각료회의」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인권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보고를 어떤 회원국으로부터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법률적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개인, 집단, 또는 비정부 단체로 부터의 청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국에게 "인권존중의 기초 위에서 …… 원만한 해결"을 촉구해야만 하는 의무를 진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표명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럽각료회의」에 사건의 「유럽 인권재판소」 회부를 비롯한 행동을 건의해야 한다.

인권재판소의 권한은 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국적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 그리고 제 3의 국가로서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하는 국가에 미친다. 하지만 인권재판소는 개인으로부터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도 피고국가가 인권재판소의 권한을 수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재판소의 관할을 수용하는 방법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재판소의 임의적인 관할을 수용한다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가능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의 인권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인권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회부될 수 없을 경우에는 유럽협의회의 각료회의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럽협약의 기구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협정의 대상문제에 대해 많은 분량의 판례를 남긴 결과, 일부 국가의 경우 협약조항을 국내의 헌법 또는 실정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입법조치를 취해 국내법이 협약의 의무사항과 일치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주의 인권체계〉

1948년 제 9차 「범미주국가회의(Pan-American Conference)」는 「미주국가기구(OAS)」의 창설과 함께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선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비슷한 것이나만 7개월 전에 발표된 것으로서,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한 것이었다. (의무규정 면에서 어찌면 그리스, 로마와 중세의 자연법 이론에로의 후퇴인지도 모른다.) 그후 1959년 미주 외무장관 회의는 OAS의 기구로서 「미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미주대륙의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활동

을 담당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1969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개최된 「인권에 대한 미주국가 특별회의」는 "미주인권협약"을 채택하여 현재의 「미주인권위원회」를 협약 이행을 위한 기구로 만들었고, 산호세를 본부로 「미주인권재판소」를 설치했던 것이다.

1978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미주협약의 내용과 절차는 유엔과 유럽의 협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유럽의 「사회현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주협약은 유엔 및 유럽협약과는 달리 개인, 집단, 그리고 비정부 단체에 의한 청원권을 무조건 인정하고 있다. 유엔협약에서는 관련된 국가가 선택조항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청원권을 인정하고, 유럽협약의 경우 관련된 국가의 특별선언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미주협약의 국가간 제소는 그러한 절차를 명백하게 동의한 국가들 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6/

〈아프리카의 인권체계〉

지 멀리 1961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인권위원회, 관련 국가, 그리고 비정부 및 기타 단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을 받아 들여 1981년 케나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18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인권과 국민적인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현장"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현장은 비준 후 3개월 또는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개의 회원국 중에서 필요로 하는 26개국의 비준 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장은 유럽 및 미주협약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인권 및 국민적 권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과 보호기능 양쪽을 갖게 하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주장하는 위반의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국가, 개인, 집단, 그리고 비정부 단체 모두가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및 미주협약과는 반대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또는 화해절차 없이 관련된 국가로 하여금 원만한 해결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현장은 인권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서양의 법률체계에 보편적인 적대적이고 강제적인 절차 대신 아프리카의

관습 및 전통은 중재와 화해, 그리고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프리카 현장에 있어 기타 네 가지의 특이한 면모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한 것이었다. (의무규정 면에서 어찌면 그리스, 로마와 중세의 자연법 이론에로의 후퇴인지도 모른다.) 그후 1959년 미주 외무장관 회의는 OAS의 기구로서 「미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미주대륙의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활동

국내 법원과 국제적인 인권문제

국제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주장에 있어 새롭고, 아직도 더 가다듬어야 할 접근 방법이다.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형성된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이질 수 없는 혜석상의 문제 이외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입장"이나 "국가행위" 아니면 "정치적 원칙의 문제" 등의 딱지가 붙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은 국내 상황에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한 고등법원이 고문의 세계적인 금지는 분명히 국제법으로 확립된 결과 미국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놀랄만한 판결에서 가장 극명하게 증명된 바와 같이 확실히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학자인 리차드 릴리치(Richard Lillich)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같이, "(국내) 법원이 국내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게 국제적인 인권 법률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결의안 상정 등 위원국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인권단체는 한국내의 인권문제를 인권위에서 다룰 때 한국정부를 당연히 비판하지만 해외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권위에서 정부대표들끼리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와 정부대표 사이에도 인권문제의 성격에 따라 비판 또는 칭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대정부관계와 인권위에서의 대정부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전에 국내에서 정부대표단과 민간인권단체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권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인권위 이후에도 다시 인권위의 주요 결정사항과 대표단의 주요 활동 및 민간인권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서로 보고하고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서방국가처럼 정부대표단에 민간인(Public member)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궁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집 2 : 인권운동과 법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

류 은 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1. 들어가며 —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¹⁾)을 기초하는 논의가 한창일 당시 세네갈의 대통령이었던 Leopold Senghor가 했다는 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도 경제 · 사회적 권리가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을 현실은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전세계 인류의 1/5이상이 좌취와 빈곤하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매년 13~18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1분마다 24명이 죽는 꼴이고, 그 중 18명은 5살 이하의 어린이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자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굶주림과 차

- 1) 보통 국제인권규약이라고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은 규약 · 협약 등의 정부번역이 국제인권조약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각 조약마다 제각기 다른 번역어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조약'으로 통칭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A규약, B규약이라는 약어는 조약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뿐더러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약어이므로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취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생활이 많이 풍요로워졌고 곧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된다고 한다. 이 출렁임 속에서 아직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버리지는 아이들, 오갈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 육아전쟁이라 불릴 만큼 부족한 탁아시설, 폐교위기에 처한 농촌학교, 외국인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고통분담'과 '경쟁력강화', '세계1위'의 신화에 떠밀리는 노동현장이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발전에 직결되는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가 오히려 발전을 이유로 하여 무시되고 위험시되는 속에서 외치지는 국제경쟁력이나 세계화의 구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 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통한 발전의 성취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소망일 뿐인가?

불행하게도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내의 피상적 인식²⁾과 그로 인한 시행노력의 부족은 우리의 인권수준이 1세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의 세대를 이야기할 때, 1세대의 인권은 '자유권'으로 2세대의 인권은 '사회권'으로 요약, 대표된다. 전자가 '○○를 당하지 않을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후자는 '○○를 받을 권리,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당장 실행할 수 있으니까

권리이고, 경제 · 사회적 권리는 돈이 많이 들고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에 있어서 두개의 권리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연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이러한 인권규정 사이의 관계를 '상호 의존성과 불가분성'이라고 말한다.

한 예로,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정치적 수인의 경우 그는 일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그 결과 감옥에서 노동할 권리도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도 문화적 권리도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집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집과 거처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을 리 없으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자식이 있다면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 이렇듯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관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 사회적 권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 · 사회적 권리는 법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 · 사회적 권리의 때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자원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 · 사회적 권리는 재판회부 가능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 사회적 권리는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의 대표자격인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는 '간섭없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자원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빙곤을 제거하기 위한 강제적 행위를 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을 펴는 것 등은 자유에 대한 의도적 강제이기 조차 하다.

과연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는 단지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고,

2)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프로그램규정설과 추상적 권리설이 대립하여 왔고, 추상적 권리설에 다수 학자가 지지해 왔다. 최근에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하는 세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 대표적으로 허영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들의 이념적 기초를 뜻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이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라고 말하고, 권영성 교수는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과 같은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 법이론과 판결의 주요조류는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구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지 사람들의 '열망'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조건이 될 때까지 보장받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래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경제·사회적 권리 역시 시민·정치적 권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영역이다.

첫째, '사법심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 예로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법관에게는 난감한 문제이겠지만 영양학자에게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아동기금 같은 곳에선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권의 문제 역시 그렇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많은 조약들은 노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근거들이며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이들 조약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둘째, 경제·사회적 권리가 돈과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생각해 보자. 고문이라는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제도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노력이 함께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원조를 받을 가능성 있는 조건에서 어린이가 원조를 받지 못해 죽었다면, 그 사회는 그 어린이에 대해 적극적인 원조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합리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고, 권리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강제'로부터의 자유만이 자유라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 가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리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대소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제확인"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삼아왔다. 인권보장에 관한 유엔과 유엔 산하 여러 기관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설정에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에 관한 기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유엔의 인권보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인권조약을 채택하고 당사국에게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사건을 통보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조약에 따라서 실시조치의 내용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첫번째의 이행의무부과는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사국이 꺼리기 쉽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유엔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난민조약, 고문방지조약 등 20개의 조약을 중심으로 60개에 달하는 국제인권문서를 채택했다. 갖가지 UN 인권관련 회기 중에는 이와 같은 조약, 선언 등의 작성과 함께 여러 인권문제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즉, 각종 인종차별문제, 사형폐지문제, 발전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과 인권의 관계, 소수자의 보호, 심신장애인의 인권 등 여러 방면에 걸친다.

이와 같은 검토분야의 확장은 국제조직의 설치와 메카니즘, 실시절차의 정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는 1967년에 인권침해 정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엔에 통보, 건의하는 제도는 1971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유권·사회권 조

5) 박홍규 편저, UN, 형성사, 1991, 34, 191쪽.

6)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1994, 99-102쪽.

그러므로, 인권의 충분하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만 한다. 어느 한 쪽이 소홀할 때 그것은 다른 한편의 권리보장도 불완전하게 만들 뿐이다. 인권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2. 국제인권보장의 틀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은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분리하여 선·후차성을 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에 놓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동·서양과 제 3세계가 1·2차 대전을 겪은 이후 토론해 왔던 모든 것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일관된 수용을 증명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 국가의 50% 이상이 양조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국제적 인권보장체계 속에서 권리의 '전체성(totality)' 속에 수용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본적 권리의 내용들이며, 이는 최근의 국제적 논의 속에서 제자리에 서 있다."

국제인권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은, 제 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가운데 탄생하였고, 유엔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유엔은 현장의 첫머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p. 28-37; Dilys M. Hi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acmillan, 1992

4) "인권에 관한 아·태 지역 비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바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요구"이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시민·정치적 권리들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게 강조될 것의 재확인"이다. Limburg Principles 3항: "인권과 근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똑같은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두의 실행과 증진, 보장에 주어져야 한다."

약은 1976년에 발효되었다. 수많은 인권실태 조사단도 1970년대 후반부터 설치되었다.

이 중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항목은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그러나 1976년 발효된 사회권 조약은 시작부터 경시되었고 다른 조약과는 달리 조약 자체로는 보고의 심의·권고 등을 할 실시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권조약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첫째 제 3세계국가들의 구조적 접근이 수용됨으로써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점, 둘째 재역할을 못해낸 회기내 실무그룹의 '새로짜기'를 요구하여 이에 성공한 점, 셋째 사회권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자 한 Philip Alston 교수 등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사회권조약은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 파업권,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모성·아동의 권리, 생활수준·식량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과학과 문화에 관한 권리" 등 각종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조치'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으로 곧바로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고 줄곧 '노력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권 조약은 '제소절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약 16조에 의거하여 가입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과 그 진정성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당사국의 보고서와 관련유엔전문기관의 보고서는 유엔사무국에 제출되고 사무국은 그 보고들을 인권관련전문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낸다.

실질적으로 조약의 실행을 심사하는 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

7) 물론, 차별금지와 같은 조항은 가입국이 가입과 동시에 즉각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Limburg Principles 22항: "2조 2항의 '차별의 금지'와 같은 조약 하의 어떤 의무는 충분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를 모델로 해서 1985년에 만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기내 실무그룹(sessional Working Group)이 심사를 했으나, 그 활동의 비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조약의 충분한 실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위원회는 설립이후 1987년과 88년의 1, 2차 연례회기를 통해 124개국의 최초보고서와 44개국의 2차보고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첫째 사회권 조약의 규정들을 명확화하고 조약 각 조항의 해석지침과 당사국의 최소한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를 제시하는 일, 둘째 충분한 정보의 수집, 정부보고서의 심사와 그를 통한 권고를 그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관련유엔전문기관(ILO, WHO, UNESCO, FAO)과 NGOs의 협력을 받는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이며 본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에 의해 지명·선출된다. 이 전문가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해 선출되지만 정부의 대표는 아니며, 정부에서 독립되어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위원회는 조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

3. Limburg 원칙에 비춰 본 정부최초보고서의 비판적 검토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정부의 원칙적 의무는 국가적 수준에서 조약의 명문화된 조항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의무는 사회권조약의 시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초점이며, 당사국 정부의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8) Philip Alston,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92, Clarendon Press, Oxford, pp. 473-506

다음에서는 위와같은 원칙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살펴보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가 보다 철저하게 향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성취하였던 진전사항(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에 관하여, 동 규약 제 16조 및 제 1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상과 같은 정부보고서의 서문에서 나타나듯 국제조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법과 정책의 틀에 얹매이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인권조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약이 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위원회와 다른 당사국

과적인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채택한 문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내걸었던 목표에는 못미치는 것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사회권에 대한 침해를 제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의 채택, NGOs의 '발언'이상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한 자원, 유엔 내의 사회권에 관한 전문성의 강화, 사회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마련, 가입당사국이 보고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요소 마련 등이다. Philip Alst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Human Rights: An Agenda for the Next Century*,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C. 1994, pp. 154-164

선택의정서의 채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Philip Alston, "No Right to Complain About Being Poor: The Need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Economic Rights Covenant", *The Fut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Norwegian University Press, Oslo, 1991, pp. 79-100 참조.

사회권조약 16조와 관련조항⁹⁾을 종합하면 정부보고서는 진전사항만이 아니라 적합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또한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점을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 특히 정부보고서가 그 나라와 관련된 궁정적인 발전만을 개략적으로 그리려 할 때, 그러한 보고서는 조약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같은 원칙은 1986년의 림버그원칙(Limburg Principles)¹⁰⁾과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후속조치로 Philip Alston 교수가 제기한 원칙¹¹⁾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

9) 16조 "이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17조 2항에서 더 정교화되어 "동 보고서는 이 조약 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0) 조약의 실행에 관한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타(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1986년 6월 2-6일에 걸쳐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사회권 조약 가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한 결과이다.

이 논의의 참가자들은 현 국제법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림버그원칙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1) 가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국가의 보고서와 조약 4조하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 고려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약의 해석원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항, 국가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국제협력에 관한 것,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관한 것,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와 전문기구, 여타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속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사회권조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가입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N.4/1987/17, Annex, *Human Rights Quarterly* 9(1987),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22-229

11) 1993년 세계인권대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효

정부들이 조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반적 권고(General Comments)에서 조약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보고하는 것이 단지 정부의 공적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보고서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약은 진전사항만이 아니라 적합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또한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보고서는 '궁정적인 발전사항'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인권외교에 대한 무지와 보고의무에 대한 피상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외교의 예를 들자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성숙"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호언장담해 왔다. 인권선진국에서도 그런 호언장담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나름의 인권사각지대가 있고 인권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생활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와 가치적 성과만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정부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를 쳐놓고 구체적인 국내의 성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방식인가?

정부보고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전정도'에 대한 '보고'가 아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식의 '선언'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여 이제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제화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민주화개혁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등의 표현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주장이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12) UN Doc. E/1987/28, para. 301-304